

성능인증서

(Products Certificate)

인증서번호 Ref. Cert. No.
KGS-22-040

신청인 : 한선엔지니어링(주)

License Holder

주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361로 27

Address

대표자 : 이제훈

CEO

공장명 : 한선엔지니어링(주)

Factory

소재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361로 27

Address

해당 규격명

Test Standard

시험된 제품시료는 우측

해당규격에 적합함을 증명함

A sample of the product

was tested and found to be in conformity with (수소자동차 연료 공급 부품)

STANDARD

EDITION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018호

2020

시험품 Tested Product

제품명 :

Product Category

수소자동차 연료공급부품

- 대상품 : 수동밸브

- 사용압력 : 35 MPa

모델/형식구분 :

Model/Type Ref.

SFBVC3-S-16M-H35K-S6 /

H2 Forged Ball Valve

SFBVC60-H35 Series(16M)

상표마크(해당하는 경우) :

Trademark (if any)

해당없음

공장심사 합격일

2022.05.10.

Factory Audit pass date

발행일자 : 2022.05.30.

Date of issuance

유효기간 : 해당없음

Validation

위 제품은 성능인증기준에 적합하므로 성능을 인증합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변경내역 및 추가정보

[Additional information (if necessary)]

인증서번호
Ref. Cert. No.

KGS-22-040

일자 Date	내 용 substance							
2022.05.30	- 최초인증				2022.5.30 <i>윤영근</i>			
	No	Part name	Material	Q'ty	No	Part name	Material	Q'ty
	1	Body	SS316	1	11	Thrust Washer	PEEK	1
	2	Connector	SS316	2	12	Stem Packing	PTFE	1 set
	3	Ball	SS316	1	13	Stem Washer	SS316	1
	4	Ball Seat	PEEK	2	14	Packing Bolt	SS316	1
	5	O-ring	EPDM	2	15	Lock Nut	SS316	1
	6	Disc Spring	SS316	2	16	Set Screw	SS316	1
	7	Retainer	SS316	2	17	Handle	Nylon	1
	8	O-ring	EPDM	2	18	Front Ferrule	SS316	1
	9	Backup Ring	PEEK	2	19	Back Ferrule	SS316	1
	10	Stem	SS316	1	20	Nut	SS316	1



한국가스안전공사 ☎369-811 충북 음성군 맹동면 원중로 1390

Korea Gas Safety Corporation, 1390, Wonjung-ro, Maengdong-myeon, Eumseong-gun, Chungchongbuk-do Korea
Telephone: +82-(43)-750-1508, Fax: +82-(43)-750-1929

성능인증을 받은 자가 준수할 유의사항 (KGS-22-040)

1. 성능인증의 유효기간 : 해당없음
2. 성능인증 재신청
 - 가. 인증의 유효기간이 경과되었을 경우(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1월 사이에 신청)
 - 나. 인증 받은 제품의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 규격 또는 재료가 변경되었을 경우
3. 사후관리
 - 가.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이 인증기준을 지속적으로 만족시키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성능인증일을 기준으로 매 1년 마다 사후관리를 실시(매년초 별도 안내공문 발송)
 - 나. 사후관리는 공사의 담당자가 제조업체를 방문하여 품질관리상태 점검(공정관리 등) 및 제품시험 실시
 - 동일 업체의 성능인증일이 서로 다른 품목의 사후관리는 가장 먼저 사후관리를 받아야 하는 품목의 사후관리일에 함께 실시
 - 다. 사후관리 계획을 통보받은 업체는 성능인증 신청서(사후관리 비용)를 제출하여 품목별 대표 모델(1년간 생산량이 가장 많은 모델 또는 생산 모델(호칭, 규격, 용량 등)에서 중앙값에 해당되는 것) 1개에 대하여 성능인증기준에서 정한 필수 시험항목에 대하여 제품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성능인증업체의 품질관리 상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성능인증 전체 모델에 대한 성능인증기준 모든 시험항목의 제품시험으로 사후관리를 대신할 수 있다.
4. 인증 받은 자의 의무
 - 가. 인증 업체는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이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① 업체명, 대표자 또는 양도, 양수 등으로 인한 법적 지위의 변경
 - ② 소재지 변경
 - ③ 성능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구조, 재료, 부품 등의 변경
 - ④ 외주업체가 변경된 경우
 - 나. 가의 규정에 의한 통보 사항이 성능인증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품목별 공사 담당자는 성능인증업체의 공정관리, 제품관리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결과 성능인증 제품의 품질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정조치가 될 때까지 성능인증마크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 다. 성능인증을 받은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약정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5. 성능인증의 취소 등 결과조치
 - 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성능인증을 취소 또는 정지 할 수 있다.
 - ① 성능변경을 수반하는 구조, 규격, 재료를 임의로 변경한 경우
 - ② 사후관리 제품시험 및 수거검사 결과 별표2에 따른 불량인 경우
 - ③ 4의 인증 받은 자의 의무 중 가항의 ③, ④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업체의 모든 인증 품목의 성능인증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 ① 사후관리를 거부한 경우
 - ② 성능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성능인증 표시를 한 경우 및 홍보한 경우
 - ③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인증서를 발급 받은 경
 - ④ 4의 인증 받은 자의 의무 중 가항의 ①, ②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다. 성능인증의 취소를 받은 업체는 취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능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6. 인증의 표시방법
 - 가. 인증의 표시는 제조되는 각각의 제품마다 하여야 한다.
 - 나. 표시방법은 별도 안내되는 성능인증 표시방법을 따른다.
 - 다. 표시는 설치 후 떨어지거나 지워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성능인증은 인증서에 기재된 제조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으로서 성능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8. 성능인증마크는 본래의 의미와 다르게 사용자가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방법으로 광고, 카탈로그 등에 사용하면 인증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됩니다.
9.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인증기관에 신청하여 인증서를 재발급 또는 변경내역 이면기재를 받아야 합니다.
 - 가. 상호, 대표자 또는 주소(소재지)의 변경
 - 나. 중대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변경(예: 모델명 변경, 파생모델의 추가, 변경 또는 삭제)
 - 다. 인증서의 분실 또는 훼손
10. 성능인증을 받은 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가. 성능인증표시 등 인증요건의 유지 관리
 - ※ 인증을 받기 이전 또는 정지·취소된 이후 생산된 제품에 성능인증 표시를 하면 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됨.
 - 나. 자체검사의 실시 및 그 기록관리
 - ※ 인증을 받은 자는 제품검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제품의 품질이 안전기준에 미달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11. 성능인증을 받은 자는 공장심사 또는 사후관리 공장방문 시 심사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한국가스안전공사

Page 1 / 3

Number of Page

성능인증서 (Products Certificate)

인증서번호
Ref. Cert. No.

KGS-22-039

신청인 : 한선엔지니어링(주)
License Holder

주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361로 27
Address
대표자 : 이제훈
CEO

공장명 : 한선엔지니어링(주)
Factory

소재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361로 27
Address

해당 규격명
Test Standard

시험된 제품시료는 우측

해당규격에 적합함을 증명함.

A sample of the product

was tested and found to be
in conformity with

STANDARD

EDITION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018호

2020

(수소자동차 연료 공급 부품)

시험품 Tested Product

제품명 :

Product Category

수소자동차 연료공급부품

- 대상품 : 수동밸브

- 사용압력 : 35 MPa

모델/형식구분 :

Model/Type Ref.

SFBVC2-S-10M-H35K-S6 /
H2 Forged Ball Valve
SFBVC60-H35 Series(10M)

상표마크(해당하는 경우) :
Trademark (if any)

해당없음

공장심사 합격일

2022.05.10.

Factory Audit pass date

발행일자 : 2022.05.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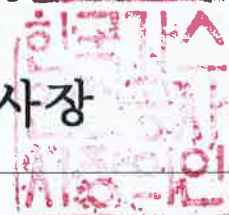
Date of issuance

유효기간 : 해당없음

Validation

위 제품은 성능인증기준에 적합하므로 성능을 인증합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한국가스안전공사 ☎369-811 충북 음성군 맹동면 원종로 1390

Korea Gas Safety Corporation, 1390, Wonjung-ro, Maengdong-myeon, Eumseong-gun, Chungchongbuk-do Korea

Telephone: +82-(43)-750-1508, Fax: +82-(43)-750-1929

변경내역 및 추가정보

[Additional information (if necessary)]

인증서번호
Ref. Cert. No.
KGS-22-039

일자 Date	내 용 substance							
2022.05.30	- 최초인증				2022.5.30 <i>유영-3</i>			
	No	Part name	Material	Q'ty	No	Part name	Material	Q'ty
	1	Body	SS316	1	12	Stem Washer	SS316	1
	2	Connector	SS316	2	13	Stem Packing	PTFE	1 set
	3	Ball	SS316	1	14	Thrust Washer	PEEK	1
	4	Ball Seat	PEEK	2	15	Packing Bolt	SS316	1
	5	Retainer	SS316	2	16	Lock Nut	SS316	1
	6	Seat Carrier Guide	SS316	2	17	Set Screw	SS316	1
	7	Disc Spring	SS316	2	18	Handle	Nylon	1
	8	O-ring	EPDM	2	19	Front Ferrule	SS316	1
	9	Backup Ring	PEEK	2	20	Back Ferrule	SS316	1
	10	O-ring	EPDM	2	21	Nut	SS316	1
	11	Stem	SS316	1				



한국가스안전공사 ☎369-811 충북 음성군 맹동면 원충로 1390

Korea Gas Safety Corporation, 1390, Wonjung-ro, Maengdong-myeon, Eumseong-gun, Chungchongbuk-do Korea

Telephone: +82-(43)-750-1508, Fax: +82-(43)-750-1929

성능인증을 받은 자가 준수할 유의사항

(KGS-22-039)

1. 성능인증의 유효기간 : 해당없음
2. 성능인증 재신청
 - 가. 인증의 유효기간이 경과되었을 경우(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1월 사이에 신청)
 - 나. 인증 받은 제품의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 규격 또는 재료가 변경되었을 경우
3. 사후관리
 - 가.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이 인증기준을 지속적으로 만족시키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성능인증일을 기준으로 매 1년 마다 사후관리를 실시(매년초 별도 안내공문 발송)
 - 나. 사후관리는 공사의 담당자가 제조업체를 방문하여 품질관리상태 점검(공정관리 등) 및 제품시험 실시
 - 동일 업체의 성능인증일이 서로 다른 품목의 사후관리는 가장 먼저 사후관리를 받아야 하는 품목의 사후관리일에 함께 실시
 - 다. 사후관리 계획을 통보받은 업체는 성능인증 신청서(사후관리 비용)를 제출하여 품목별 대표 모델(1년간 생산량이 가장 많은 모델 또는 생산 모델(호칭, 규격, 용량 등)에서 중앙값에 해당되는 것) 1개에 대하여 성능인증기준에서 정한 필수 시험항목에 대하여 제품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성능인증업체의 품질관리 상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성능인증 전체 모델에 대한 성능인증기준 모든 시험항목의 제품시험으로 사후관리를 대신할 수 있다.
4. 인증 받은 자의 의무
 - 가. 인증 업체는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이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① 업체명, 대표자 또는 양도, 양수 등으로 인한 법적 지위의 변경
 - ② 소재지 변경
 - ③ 성능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구조, 재료, 부품 등의 변경
 - ④ 외부업체가 변경된 경우
 - 나. 가의 규정에 의한 통보 사항이 성능인증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품목별 공사 담당자는 성능인증업체의 공정관리, 제품관리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결과 성능인증 제품의 품질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정조치가 될 때까지 성능인증마크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 다. 성능인증을 받은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약정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5. 성능인증의 취소 등 결과조치
 - 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성능인증을 취소 또는 정지 할 수 있다.
 - ① 성능변경을 수반하는 구조, 규격, 재료를 임의로 변경한 경우
 - ② 사후관리 제품시험 및 수거검사 결과 별표2에 따른 불량인 경우
 - ③ 4의 인증 받은 자의 의무 중 가항의 ③, ④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업체의 모든 인증 품목의 성능인증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 ① 사후관리를 거부한 경우
 - ② 성능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성능인증 표시를 한 경우 및 홍보한 경우
 - ③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인증서를 발급 받은 경우
 - ④ 4의 인증 받은 자의 의무 중 가항의 ①, ②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다. 성능인증의 취소를 받은 업체는 취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능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6. 인증의 표시방법
 - 가. 인증의 표시는 제조되는 각각의 제품마다 하여야 한다.
 - 나. 표시방법은 별도 안내되는 성능인증 표시방법을 따른다.
 - 다. 표시는 설치 후 떨어지거나 지워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성능인증은 인증서에 기재된 제조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으로서 성능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8. 성능인증마크는 본래의 의미와 다르게 사용자가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방법으로 광고, 카탈로그 등에 사용하면 인증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됩니다.
9.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인증기관에 신청하여 인증서를 재발급 또는 변경내역 이면기재를 받아야 합니다.
 - 가. 상호, 대표자 또는 주소(소재지)의 변경
 - 나. 중대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변경(예: 모델명 변경, 파생모델의 추가, 변경 또는 삭제)
 - 다. 인증서의 분실 또는 훼손
10. 성능인증을 받은 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가. 성능인증표시 등 인증요건의 유지 관리
 - ※ 인증을 받기 이전 또는 정지·취소된 이후 생산된 제품에 성능인증 표시를 하면 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됨.
 - 나. 자체검사의 실시 및 그 기록관리
 - ※ 인증을 받은 자는 제품검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제품의 품질이 안전기준에 미달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11. 성능인증을 받은 자는 공장심사 또는 사후관리 공장방문 시 심사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성능인증서

(Products Certificate)

인증서번호 Ref. Cert. No.
KGS-22-038

신청인 : 한선엔지니어링(주)

License Holder

주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361로 27

Address

대표자 : 이제훈

CEO

공장명 : 한선엔지니어링(주)

Factory

소재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361로 27

Address

해당 규격명

Test Standard

시험된 제품시료는 우측

해당규격에 적합함을 증명함

A sample of the product

was tested and found to be in conformity with (수소자동차 연료 공급 부품)

STANDARD

EDITION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018호

2020

시험품 Tested Product

제품명 :

Product Category

수소자동차 연료공급부품

- 대상품 : 피팅

- 사용압력 : 35 MPa

모델/형식구분 :

Model/Type Ref.

SUBA-8-8-H35K-S6 /
S-Lok Tube Fittings AN
Bulkhead Union(1/2")

상표마크(해당하는 경우) :
Trademark (if any)

해당없음

공장심사 합격일

2022.05.10.

Factory Audit pass date

발행일자 : 2022.05.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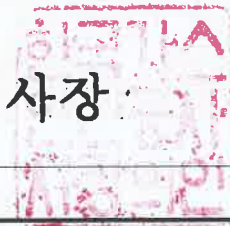
Date of issuance

유효기간 : 해당없음

Validation

위 제품은 성능인증기준에 적합하므로 성능을 인증합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별지 제5호 서식)(을)



변경내역 및 추가정보
[Additional information (if necessary)]

인증서번호
Ref. Cert. No.

KGS-22-038

[illegible]

한국가스안전공사 ☎369-811 충북 음성군 맹동면 원중로 1390

Korea Gas Safety Corporation, 1390, Wonjung-ro, Maengdong-myeon, Eumseong-gun, Chungchongbuk-do Korea

Telephone: +82-(43)-750-1508, Fax: +82-(43)-750-1929

성능인증을 받은 자가 준수할 유의사항

(KGS-22-038)

1. 성능인증의 유효기간 : 해당없음
2. 성능인증 재신청
 - 가. 인증의 유효기간이 경과되었을 경우(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1월 사이에 신청)
 - 나. 인증 받은 제품의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 규격 또는 재료가 변경되었을 경우
3. 사후관리
 - 가.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이 인증기준을 지속적으로 만족시키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성능인증일을 기준으로 매 1년마다 사후관리를 실시(매년초 별도 안내공문 발송)
 - 나. 사후관리는 공사의 담당자가 제조업체를 방문하여 품질관리상태 점검(공정관리 등) 및 제품시험 실시
 - 동일 업체의 성능인증일이 서로 다른 품목의 사후관리는 가장 먼저 사후관리를 받아야 하는 품목의 사후관리일에 함께 실시
 - 다. 사후관리 계획을 통보받은 업체는 성능인증 신청서(사후관리 비용)를 제출하여 품목별 대표 모델(1년간 생산량이 가장 많은 모델 또는 생산 모델(호칭, 규격, 용량 등)에서 중앙값에 해당되는 것) 1개에 대하여 성능인증기준에서 정한 필수 시험항목에 대하여 제품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성능인증업체의 품질관리 상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성능인증 전체 모델에 대한 성능인증기준 모든 시험항목의 제품시험으로 사후관리를 대신할 수 있다.
4. 인증 받은 자의 의무
 - 가. 인증 업체는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이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① 업체명, 대표자 또는 양도, 양수 등으로 인한 법적 지위의 변경
 - ② 소재지 변경
 - ③ 성능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구조, 재료, 부품 등의 변경
 - ④ 외주업체가 변경된 경우
 - 나. 가의 규정에 의한 통보 사항이 성능인증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품목별 공사 담당자는 성능인증업체의 공정관리, 제품관리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결과 성능인증 제품의 품질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정조치가 될 때까지 성능인증마크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 다. 성능인증을 받은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약정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5. 성능인증의 취소 등 결과조치
 - 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성능인증을 취소 또는 정지 할 수 있다.
 - ① 성능변경을 수반하는 구조, 규격, 재료를 임의로 변경한 경우
 - ② 사후관리 제품시험 및 수거검사 결과 별표2에 따른 불량인 경우
 - ③ 4의 인증 받은 자의 의무 중 가항의 ③, ④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업체의 모든 인증 품목의 성능인증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 ① 사후관리를 거부한 경우
 - ② 성능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성능인증 표시를 한 경우 및 홍보한 경우
 - ③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인증서를 발급 받은 경우
 - ④ 4의 인증 받은 자의 의무 중 가항의 ①, ②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다. 성능인증의 취소를 받은 업체는 취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능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6. 인증의 표시방법
 - 가. 인증의 표시는 제조되는 각각의 제품마다 하여야 한다.
 - 나. 표시방법은 별도 안내되는 성능인증 표시방법을 따른다.
 - 다. 표시는 설치 후 떨어지거나 지워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성능인증은 인증서에 기재된 제조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으로서 성능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8. 성능인증마크는 본래의 의미와 다르게 사용자가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방법으로 광고, 카탈로그 등에 사용하면 인증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됩니다.
9.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인증기관에 신청하여 인증서를 재발급 또는 변경내역 이면기재를 받아야 합니다.
 - 가. 상호, 대표자 또는 주소(소재지)의 변경
 - 나. 중대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변경(예: 모델명 변경, 파생모델의 추가, 변경 또는 삭제)
 - 다. 인증서의 분실 또는 훼손
10. 성능인증을 받은 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가. 성능인증표시 등 인증요건의 유지 관리
 - ※ 인증을 받기 이전 또는 정지·취소된 이후 생산된 제품에 성능인증 표시를 하면 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됨.
 - 나. 자체검사의 실시 및 그 기록관리
 - ※ 인증을 받은 자는 제품검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제품의 품질이 안전기준에 미달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11. 성능인증을 받은 자는 공장심사 또는 사후관리 공장방문 시 심사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성능인증서

(Products Certificate)

인증서번호
Ref. Cert. No.

KGS-22-037

신청인 : 한선엔지니어링(주)
License Holder

주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361로 27
Address
대표자 : 이제훈
CEO

공장명 : 한선엔지니어링(주)
Factory

소재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361로 27
Address

해당 규격명
Test Standard

시험된 제품시료는 우측

해당규격에 적합함을 증명함.

A sample of the product

was tested and found to be in conformity with (수소자동차 연료 공급 부품)

STANDARD

EDITION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018호

2020

시험품 Tested Product

제품명 :

Product Category

수소자동차 연료공급부품

- 대상품 : 피팅

- 사용압력 : 35 MPa

모델/형식구분 :

Model/Type Ref.

SUBA-4-4-H35K-S6 /
S-Lok Tube Fittings AN
Bulkhead Union(1/4")

상표마크(해당하는 경우) :
Trademark (if any)

해당없음

공장심사 합격일

2022.05.10.

Factory Audit pass date

발행일자 : 2022.05.30.

Date of issuance

유효기간 : 해당없음

Validation

위 제품은 성능인증기준에 적합하므로 성능을 인증합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한국가스안전공사 ☎369-811 충북 음성군 맹동면 원종로 1390

Korea Gas Safety Corporation, 1390, Wonjung-ro, Maengdong-myeon, Eumseong-gun, Chungchongbuk-do Korea

Telephone: +82-(43)-750-1508, Fax: +82-(43)-750-1929

(별지 제5호 서식)(을)



변경내역 및 추가정보
[Additional information (if necessary)]

인증서번호
Ref. Cert. No.

KGS-22-037

[illegible]

한국가스안전공사 ☎369-811 충북 음성군 맹동면 원중로 1390

Korea Gas Safety Corporation, 1390, Wonjung-ro, Maengdong-myeon, Eumseong-gun, Chungchongbuk-do Korea
Telephone: +82-(43)-750-1508, Fax: +82-(43)-750-1929

성능인증을 받은 자가 준수할 유의사항

(KGS-22-037)

1. 성능인증의 유효기간 : 해당없음
2. 성능인증 재신청
 - 가. 인증의 유효기간이 경과되었을 경우(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1월 사이에 신청)
 - 나. 인증 받은 제품의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 규격 또는 재료가 변경되었을 경우
3. 사후관리
 - 가.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이 인증기준을 지속적으로 만족시키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성능인증일을 기준으로 매 1년 마다 사후관리를 실시(매년초 별도 안내공문 발송)
 - 나. 사후관리는 공사의 담당자가 제조업체를 방문하여 품질관리상태 점검(공정관리 등) 및 제품시험 실시
 - 동일 업체의 성능인증일이 서로 다른 품목의 사후관리는 가장 먼저 사후관리를 받아야 하는 품목의 사후관리일에 함께 실시
 - 다. 사후관리 계획을 통보받은 업체는 성능인증 신청서(사후관리 비용)를 제출하여 품목별 대표 모델(1년간 생산량이 가장 많은 모델 또는 생산 모델(호칭, 규격, 용량 등)에서 중앙값에 해당하는 것) 1개에 대하여 성능인증기준에서 정한 필수 시험항목에 대하여 제품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성능인증업체의 품질관리 상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성능인증 전체 모델에 대한 성능인증기준 모든 시험항목의 제품시험으로 사후관리를 대신할 수 있다.
4. 인증 받은 자의 의무
 - 가. 인증 업체는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이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① 업체명, 대표자 또는 양도, 양수 등으로 인한 법적 지위의 변경
 - ② 소재지 변경
 - ③ 성능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구조, 재료, 부품 등의 변경
 - ④ 외부업체가 변경된 경우
 - 나. 가의 규정에 의한 통보 사항이 성능인증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품목별 공사 담당자는 성능인증업체의 공정관리, 제품관리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결과 성능인증 제품의 품질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정조치가 될 때까지 성능인증마크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 다. 성능인증을 받은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약정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5. 성능인증의 취소 등 결과조치
 - 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성능인증을 취소 또는 정지 할 수 있다.
 - ① 성능변경을 수반하는 구조, 규격, 재료를 임의로 변경한 경우
 - ② 사후관리 제품시험 및 수거검사 결과 별표2에 따른 불량인 경우
 - ③ 4의 인증 받은 자의 의무 중 가항의 ③, ④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업체의 모든 인증 품목의 성능인증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 ① 사후관리를 거부한 경우
 - ② 성능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성능인증 표시를 한 경우 및 홍보한 경우
 - ③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인증서를 발급 받은 경우
 - ④ 4의 인증 받은 자의 의무 중 가항의 ①, ②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다. 성능인증의 취소를 받은 업체는 취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능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6. 인증의 표시방법
 - 가. 인증의 표시는 제조되는 각각의 제품마다 하여야 한다.
 - 나. 표시방법은 별도 안내되는 성능인증 표시방법을 따른다.
 - 다. 표시는 설치 후 떨어지거나 지워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성능인증은 인증서에 기재된 제조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으로서 성능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8. 성능인증마크는 본래의 의미와 다르게 사용자가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방법으로 광고, 카탈로그 등에 사용하면 인증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됩니다.
9.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인증기관에 신청하여 인증서를 재발급 또는 변경내역 이면기재를 받아야 합니다.
 - 가. 상호, 대표자 또는 주소(소재지)의 변경
 - 나. 중대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변경(예: 모델명 변경, 파생모델의 추가, 변경 또는 삭제)
 - 다. 인증서의 분실 또는 훼손
10. 성능인증을 받은 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가. 성능인증표시 등 인증요건의 유지 관리
 - ※ 인증을 받기 이전 또는 정지·취소된 이후 생산된 제품에 성능인증 표시를 하면 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됨.
 - 나. 자체검사의 실시 및 그 기록관리
 - ※ 인증을 받은 자는 제품검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제품의 품질이 안전기준에 미달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11. 성능인증을 받은 자는 공장심사 또는 사후관리 공장방문 시 심사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성능인증서

(Products Certificate)

인증서번호
Ref. Cert. No.

KGS-22-036

신청인 : 한선엔지니어링(주)
License Holder

주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361로 27
Address
대표자 : 이제훈
CEO

공장명 : 한선엔지니어링(주)
Factory

소재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361로 27
Address

해당 규격명
Test Standard

시험된 제품시료는 우측

해당규격에 적합함을 증명함.

A sample of the product

was tested and found to be in conformity with (수소자동차 연료 공급 부품)

STANDARD

EDITION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018호

2020

시험품 Tested Product

제품명 :

Product Category

수소자동차 연료공급부품

- 대상품 : 피팅

- 사용압력 : 35 MPa

모델/형식구분 :

Model/Type Ref.

P-SBT-4N-H35K-S6 /
Instrument Thread Fittings
Branch Tee NPT 1/4"

상표마크(해당하는 경우) :
Trademark (if any)

해당없음

공장심사 합격일

2022.05.10.

Factory Audit pass date

발행일자 : 2022.05.30.

Date of issuance

유효기간 : 해당없음

Validation

위 제품은 성능인증기준에 적합하므로 성능을 인증합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한국가스안전공사 ☎369-811 충북 음성군 맹동면 원종로 1390

Korea Gas Safety Corporation, 1390, Wonjung-ro, Maengdong-myeon, Eumseong-gun, Chungchongbuk-do Korea

Telephone: +82-(43)-750-1508, Fax: +82-(43)-750-1929

(별지 제5호 서식)(을)



변경내역 및 추가정보
[Additional information (if necessary)]

인증서번호
Ref. Cert. No.

KGS-22-036

[illegible]

한국가스안전공사 ☎369-811 충북 음성군 맹동면 원종로 1390

Korea Gas Safety Corporation, 1390, Wonjung-ro, Maengdong-myeon, Eumseong-gun, Chungchongbuk-do Korea
Telephone: +82-(43)-750-1508, Fax: +82-(43)-750-1929

성능인증을 받은 자가 준수할 유의사항 (KGS-22-036)

1. 성능인증의 유효기간 : 해당없음
2. 성능인증 재신청
 - 가. 인증의 유효기간이 경과되었을 경우(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1월 사이에 신청)
 - 나. 인증 받은 제품의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 규격 또는 재료가 변경되었을 경우
3. 사후관리
 - 가.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이 인증기준을 지속적으로 만족시키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성능인증일을 기준으로 매 1년 마다 사후관리를 실시(매년초 별도 안내공문 발송)
 - 나. 사후관리는 공사의 담당자가 제조업체를 방문하여 품질관리상태 점검(공정관리 등) 및 제품시험 실시
 - 동일 업체의 성능인증일이 서로 다른 품목의 사후관리는 가장 먼저 사후관리를 받아야 하는 품목의 사후관리일에 함께 실시
 - 다. 사후관리 계획을 통보받은 업체는 성능인증 신청서(사후관리 비용)를 제출하여 품목별 대표 모델(1년간 생산량이 가장 많은 모델 또는 생산 모델(호칭, 규격, 용량 등)에서 중앙값에 해당되는 것) 1개에 대하여 성능인증기준에서 정한 필수 시험항목에 대하여 제품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성능인증업체의 품질관리 상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성능 인증 전체 모델에 대한 성능인증기준 모든 시험항목의 제품시험으로 사후관리를 대신할 수 있다.
4. 인증 받은 자의 의무
 - 가. 인증 업체는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이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① 업체명, 대표자 또는 양도, 양수 등으로 인한 법적 지위의 변경
 - ② 소재지 변경
 - ③ 성능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구조, 재료, 부품 등의 변경
 - ④ 외부업체가 변경된 경우
 - 나. 가의 규정에 의한 통보 사항이 성능인증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품목별 공사 담당자는 성능 인증업체의 공정관리, 제품관리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결과 성능인증 제품의 품질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정조치가 될 때까지 성능인증마크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 다. 성능인증을 받은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약정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5. 성능인증의 취소 등 결과조치
 - 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성능인증을 취소 또는 정지 할 수 있다.
 - ① 성능변경을 수반하는 구조, 규격, 재료를 임의로 변경한 경우
 - ② 사후관리 제품시험 및 수거검사 결과 별표2에 따른 불량인 경우
 - ③ 4의 인증 받은 자의 의무 중 가항의 ③, ④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업체의 모든 인증 품목의 성능인증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 ① 사후관리를 거부한 경우
 - ② 성능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성능인증 표시를 한 경우 및 홍보한 경우
 - ③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인증서를 발급 받은 경우
 - ④ 4의 인증 받은 자의 의무 중 가항의 ①, ②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다. 성능인증의 취소를 받은 업체는 취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능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6. 인증의 표시방법
 - 가. 인증의 표시는 제조되는 각각의 제품마다 하여야 한다.
 - 나. 표시방법은 별도 안내되는 성능인증 표시방법을 따른다.
 - 다. 표시는 설치 후 떨어지거나 지워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성능인증은 인증서에 기재된 제조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으로서 성능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8. 성능인증마크는 본래의 의미와 다르게 사용자가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방법으로 광고, 카탈로그 등에 사용하면 인증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됩니다.
9.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인증기관에 신청하여 인증서를 재발급 또는 변경내역 이면기재를 받아야 합니다.
 - 가. 상호, 대표자 또는 주소(소재지)의 변경
 - 나. 중대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변경(예: 모델명 변경, 파생모델의 추가, 변경 또는 삭제)
 - 다. 인증서의 분실 또는 훼손
10. 성능인증을 받은 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가. 성능인증표시 등 인증요건의 유지 관리
 - ※ 인증을 받기 이전 또는 정지·취소된 이후 생산된 제품에 성능인증 표시를 하면 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됨.
 - 나. 자체검사의 실시 및 그 기록관리
 - ※ 인증을 받은 자는 제품검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제품의 품질이 안전기준에 미달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11. 성능인증을 받은 자는 공장심사 또는 사후관리 공장방문 시 심사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성 능 인 증 서

(Products Certificate)

인증서번호
Ref. Cert. No.

KGS-22-035

신 청 인 : 한선엔지니어링(주)

License Holder

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361로 27

Address

대 표 자 : 이제훈

CEO

시 험 품 Tested Product

제품명 :

Product Category

수소자동차 연료공급부품

- 대상품 : 피팅

- 사용압력 : 35 MPa

모델/형식구분 :

Model/Type Ref.

P-ST-4N-H35K-S6 /
Instrument Thread
Fittings Tee NPT 1/4"

상표마크(해당하는 경우) :
Trademark (if any)

해당없음

공 장 명 : 한선엔지니어링(주)

Factory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361로 27

Address

해당 규격 명

Test Standard

시험된 제품시료는 우측

해당규격에 적합함을 증명함.

A sample of the product

was tested and found to be (수소자동차 연료 공급 부품)
in conformity with

STANDARD

EDITION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018호

2020

공장심사 합격일

2022.05.10.

Factory Audit pass date

발 행 일 자 : 2022.05.30.

Date of issuance

유효 기 간 : 해당없음

Validation

위 제품은 성능인증기준에 적합하므로 성능을 인증합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별지 제5호 서식)(을)



변경내역 및 추가정보
[Additional information (if necessary)]

인증서번호
Ref. Cert. No.

KGS-22-035

[illegible]

한국가스안전공사 ☎369-811 충북 음성군 맹동면 원종로 1390

Korea Gas Safety Corporation, 1390, Wonjung-ro, Maengdong-myeon, Eumseong-gun, Chungchongbuk-do Korea
Telephone: +82-(43)-750-1508, Fax: +82-(43)-750-1929

성능인증을 받은 자가 준수할 유의사항

(KGS-22-035)

1. 성능인증의 유효기간 : 해당없음
2. 성능인증 재신청
 - 가. 인증의 유효기간이 경과되었을 경우(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1월 사이에 신청)
 - 나. 인증 받은 제품의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 규격 또는 재료가 변경되었을 경우
3. 사후관리
 - 가.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이 인증기준을 지속적으로 만족시키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성능인증일을 기준으로 매 1년 마다 사후관리를 실시(매년초 별도 안내공문 발송)
 - 나. 사후관리는 공사의 담당자가 제조업체를 방문하여 품질관리상태 점검(공정관리 등) 및 제품시험 실시
 - 동일 업체의 성능인증일이 서로 다른 품목의 사후관리는 가장 먼저 사후관리를 받아야 하는 품목의 사후관리일에 함께 실시
 - 다. 사후관리 계획을 통보받은 업체는 성능인증 신청서(사후관리 비용)를 제출하여 품목별 대표 모델(1년간 생산량이 가장 많은 모델 또는 생산 모델(호칭, 규격, 용량 등)에서 중앙값에 해당되는 것) 1개에 대하여 성능인증기준에서 정한 필수 시험항목에 대하여 제품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성능인증업체의 품질관리 상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성능인증 전체 모델에 대한 성능인증기준 모든 시험항목의 제품시험으로 사후관리를 대신할 수 있다.
4. 인증 받은 자의 의무
 - 가. 인증 업체는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이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① 업체명, 대표자 또는 양도, 양수 등으로 인한 법적 지위의 변경
 - ② 소재지 변경
 - ③ 성능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구조, 재료, 부품 등의 변경
 - ④ 외부업체가 변경된 경우
 - 나. 가의 규정에 의한 통보 사항이 성능인증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품목별 공사 담당자는 성능인증업체의 공정관리, 제품관리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결과 성능인증 제품의 품질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정조치가 될 때까지 성능인증마크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 다. 성능인증을 받은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약정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5. 성능인증의 취소 등 결과조치
 - 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성능인증을 취소 또는 정지 할 수 있다.
 - ① 성능변경을 수반하는 구조, 규격, 재료를 임의로 변경한 경우
 - ② 사후관리 제품시험 및 수거검사 결과 별표2에 따른 불량인 경우
 - ③ 4의 인증 받은 자의 의무 중 가항의 ③, ④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업체의 모든 인증 품목의 성능인증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 ① 사후관리를 거부한 경우
 - ② 성능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성능인증 표시를 한 경우 및 홍보한 경우
 - ③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인증서를 발급 받은 경우
 - ④ 4의 인증 받은 자의 의무 중 가항의 ①, ②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다. 성능인증의 취소를 받은 업체는 취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능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6. 인증의 표시방법
 - 가. 인증의 표시는 제조되는 각각의 제품마다 하여야 한다.
 - 나. 표시방법은 별도 안내되는 성능인증 표시방법을 따른다.
 - 다. 표시는 설치 후 떨어지거나 지워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성능인증은 인증서에 기재된 제조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으로서 성능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8. 성능인증마크는 본래의 의미와 다르게 사용자가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방법으로 광고, 카탈로그 등에 사용하면 인증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됩니다.
9.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인증기관에 신청하여 인증서를 재발급 또는 변경내역 이면기재를 받아야 합니다.
 - 가. 상호, 대표자 또는 주소(소재지)의 변경
 - 나. 중대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변경(예: 모델명 변경, 파생모델의 추가, 변경 또는 삭제)
 - 다. 인증서의 분실 또는 훼손
10. 성능인증을 받은 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가. 성능인증표시 등 인증요건의 유지 관리
 - ※ 인증을 받기 이전 또는 정지·취소된 이후 생산된 제품에 성능인증 표시를 하면 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됨.
 - 나. 자체검사의 실시 및 그 기록관리
 - ※ 인증을 받은 자는 제품검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제품의 품질이 안전기준에 미달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11. 성능인증을 받은 자는 공장심사 또는 사후관리 공장방문 시 심사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한국가스안전공사

Page 1 / 3

Number of Page

성능인증서 (Products Certificate)

인증서번호
Ref. Cert. No.

KGS-22-034

신청인 : 한선엔지니어링㈜

License Holder

주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361로 27

Address

대표자 : 이제훈

CEO

공장명 : 한선엔지니어링㈜

Factory

소재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361로 27

Address

해당 규격명

Test Standard

시험된 제품시료는 우측

해당규격에 적합함을 증명함.

A sample of the product

was tested and found to be (수소자동차 연료 공급 부품)
in conformity with

STANDARD

EDITION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018호

2020

시험품 Tested Product

제품명 :

Product Category

수소자동차 연료공급부품

- 대상품 : 피팅

- 사용압력 : 35 MPa

모델/형식구분 :

Model/Type Ref.

P-SMT-4N-H35K-S6 /
Instrument Thread Fittings
Male Tee NPT 1/4"

상표마크(해당하는 경우) :

Trademark (if any)

해당없음

공장심사 합격일

2022.05.10.

Factory Audit pass date

발행일자 : 2022.05.30.

Date of issuance

유효기간 : 해당없음

Validation

위 제품은 성능인증기준에 적합하므로 성능을 인증합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한국가스안전공사 ☎369-811 충북 음성군 맹동면 원중로 1390

Korea Gas Safety Corporation, 1390, Wonjung-ro, Maengdong-myeon, Eumseong-gun, Chungchongbuk-do Korea

Telephone: +82-(43)-750-1508, Fax: +82-(43)-750-1929

(별지 제5호 서식)(을)



변경내역 및 추가정보
[Additional information (if necessary)]

인증서번호
Ref. Cert. No.

KGS-22-034

[illegible]

한국가스안전공사 ☎369-811 충북 음성군 맹동면 원중로 1390

Korea Gas Safety Corporation, 1390, Wonjung-ro, Maengdong-myeon, Eumseong-gun, Chungchongbuk-do Korea

Telephone: +82-(43)-750-1508, Fax: +82-(43)-750-1929

성능인증을 받은 자가 준수할 유의사항

(KGS-22-034)

1. 성능인증의 유효기간 : 해당없음
2. 성능인증 재신청
 - 가. 인증의 유효기간이 경과되었을 경우(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1월 사이에 신청)
 - 나. 인증 받은 제품의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 규격 또는 재료가 변경되었을 경우
3. 사후관리
 - 가.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이 인증기준을 지속적으로 만족시키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성능인증일을 기준으로 매 1년 마다 사후관리를 실시(매년초 별도 안내공문 발송)
 - 나. 사후관리는 공사의 담당자가 제조업체를 방문하여 품질관리상태 점검(공정관리 등) 및 제품시험 실시
 - 동일 업체의 성능인증일이 서로 다른 품목의 사후관리는 가장 먼저 사후관리를 받아야 하는 품목의 사후관리일에 함께 실시
 - 다. 사후관리 계획을 통보받은 업체는 성능인증 신청서(사후관리 비용)를 제출하여 품목별 대표 모델(1년간 생산량이 가장 많은 모델 또는 생산 모델(호칭, 규격, 용량 등)에서 중앙값에 해당되는 것) 1개에 대하여 성능인증기준에서 정한 필수 시험항목에 대하여 제품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성능인증업체의 품질관리 상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성능인증 전체 모델에 대한 성능인증기준 모든 시험항목의 제품시험으로 사후관리를 대신할 수 있다.
4. 인증 받은 자의 의무
 - 가. 인증 업체는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이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① 업체명, 대표자 또는 양도, 양수 등으로 인한 법적 지위의 변경
 - ② 소재지 변경
 - ③ 성능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구조, 재료, 부품 등의 변경
 - ④ 외부업체가 변경된 경우
 - 나. 가의 규정에 의한 통보 사항이 성능인증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품목별 공사 담당자는 성능인증업체의 공정관리, 제품관리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결과 성능인증 제품의 품질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정조치가 될 때까지 성능인증마크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 다. 성능인증을 받은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약정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5. 성능인증의 취소 등 결과조치
 - 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성능인증을 취소 또는 정지 할 수 있다.
 - ① 성능변경을 수반하는 구조, 규격, 재료를 임의로 변경한 경우
 - ② 사후관리 제품시험 및 수거검사 결과 별표2에 따른 불량인 경우
 - ③ 4의 인증 받은 자의 의무 중 가항의 ③, ④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업체의 모든 인증 품목의 성능인증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 ① 사후관리를 거부한 경우
 - ② 성능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성능인증 표시를 한 경우 및 홍보한 경우
 - ③ 기다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인증서를 발급 받은 경우
 - ④ 4의 인증 받은 자의 의무 중 가항의 ①, ②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다. 성능인증의 취소를 받은 업체는 취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능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6. 인증의 표시방법
 - 가. 인증의 표시는 제조되는 각각의 제품마다 하여야 한다.
 - 나. 표시방법은 별도 안내되는 성능인증 표시방법을 따른다.
 - 다. 표시는 설치 후 떨어지거나 지워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성능인증은 인증서에 기재된 제조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으로서 성능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8. 성능인증마크는 본래의 의미와 다르게 사용자가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방법으로 광고, 카탈로그 등에 사용하면 인증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됩니다.
9.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인증기관에 신청하여 인증서를 재발급 또는 변경내역 이면기재를 받아야 합니다.
 - 가. 상호, 대표자 또는 주소(소재지)의 변경
 - 나. 중대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변경(예: 모델명 변경, 파생모델의 추가, 변경 또는 삭제)
 - 다. 인증서의 분실 또는 훼손
10. 성능인증을 받은 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가. 성능인증표시 등 인증요건의 유지 관리
 - ※ 인증을 받기 이전 또는 정지·취소된 이후 생산된 제품에 성능인증 표시를 하면 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됨.
 - 나. 자체검사의 실시 및 그 기록관리
 - ※ 인증을 받은 자는 제품검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제품의 품질이 안전기준에 미달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11. 성능인증을 받은 자는 공장심사 또는 사후관리 공장방문 시 심사업무가 원활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성능인증서

(Products Certificate)

인증서번호
Ref. Cert. No.

KGS-22-033

신청인 : 한선엔지니어링(주)
License Holder

주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361로 27
Address
대표자 : 이제훈
CEO

공장명 : 한선엔지니어링(주)
Factory

소재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361로 27
Address

해당 규격명
Test Standard

시험된 제품시료는 우측

해당규격에 적합함을 증명함.

A sample of the product

was tested and found to be (수소자동차 연료 공급 부품)
in conformity with

STANDARD

EDITION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018호

2020

시험품 Tested Product

제품명 :

Product Category

수소자동차 연료공급부품

- 대상품 : 피팅

- 사용압력 : 35 MPa

모델/형식구분 :

Model/Type Ref.

P-SRT-4N-H35K-S6 /
Instrument Thread Fittings
Run Tee NPT 1/4"

상표마크(해당하는 경우) :
Trademark (if any)

해당없음

공장심사 합격일

2022.05.10.

Factory Audit pass date

발행일자 : 2022.05.30.

Date of issuance

유효기간 : 해당없음

Validation

위 제품은 성능인증기준에 적합하므로 성능을 인증합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한국가스안전공사 ☎369-811 충북 음성군 맹동면 원종로 1390

Korea Gas Safety Corporation, 1390, Wonjung-ro, Maengdong-myeon, Eumseong-gun, Chungchongbuk-do Korea

Telephone: +82-(43)-750-1508, Fax: +82-(43)-750-1929

(별지 제5호 서식)(을)



변경내역 및 추가정보
[Additional information (if necessary)]

인증서번호
Ref. Cert. No.

KGS-22-033

[illegible]

한국가스안전공사 ☎369-811 충북 음성군 맹동면 원중로 1390

Korea Gas Safety Corporation, 1390, Wonjung-ro, Maengdong-myeon, Eumseong-gun, Chungchongbuk-do Korea

Telephone: +82-(43)-750-1508, Fax: +82-(43)-750-1929

성능인증을 받은 자가 준수할 유의사항

(KGS-22-033)

1. 성능인증의 유효기간 : 해당없음
2. 성능인증 재신청
 - 가. 인증의 유효기간이 경과되었을 경우(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1월 사이에 신청)
 - 나. 인증 받은 제품의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 규격 또는 재료가 변경되었을 경우
3. 사후관리
 - 가.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이 인증기준을 지속적으로 만족시키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성능인증일을 기준으로 매 1년 마다 사후관리를 실시(매년초 별도 안내공문 발송)
 - 나. 사후관리는 공사의 담당자가 제조업체를 방문하여 품질관리상태 점검(공정관리 등) 및 제품시험 실시
 - 동일 업체의 성능인증일이 서로 다른 품목의 사후관리는 가장 먼저 사후관리를 받아야 하는 품목의 사후관리일에 함께 실시
 - 다. 사후관리 계획을 통보받은 업체는 성능인증 신청서(사후관리 비용)를 제출하여 품목별 대표 모델(1년간 생산량이 가장 많은 모델 또는 생산 모델(호칭, 규격, 용량 등)에서 중앙값에 해당되는 것) 1개에 대하여 성능인증기준에서 정한 필수 시험항목에 대하여 제품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성능인증업체의 품질관리 상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성능인증 전체 모델에 대한 성능인증기준 모든 시험항목의 제품시험으로 사후관리를 대신할 수 있다.
4. 인증 받은 자의 의무
 - 가. 인증 업체는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이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① 업체명, 대표자 또는 양도, 양수 등으로 인한 법적 지위의 변경
 - ② 소재지 변경
 - ③ 성능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구조, 재료, 부품 등의 변경
 - ④ 외부업체가 변경된 경우
 - 나. 가의 규정에 의한 통보 사항이 성능인증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품목별 공사 담당자는 성능인증업체의 공정관리, 제품관리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결과 성능인증 제품의 품질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정조치가 될 때까지 성능인증마크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 다. 성능인증을 받은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약정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5. 성능인증의 취소 등 결과조치
 - 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성능인증을 취소 또는 정지 할 수 있다.
 - ① 성능변경을 수반하는 구조, 규격, 재료를 임의로 변경한 경우
 - ② 사후관리 제품시험 및 수거검사 결과 별표2에 따른 불량인 경우
 - ③ 4의 인증 받은 자의 의무 중 가항의 ③, ④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업체의 모든 인증 품목의 성능인증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 ① 사후관리를 거부한 경우
 - ② 성능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성능인증 표시를 한 경우 및 홍보한 경우
 - ③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인증서를 발급 받은 경우
 - ④ 4의 인증 받은 자의 의무 중 가항의 ①, ②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다. 성능인증의 취소를 받은 업체는 취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능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6. 인증의 표시방법
 - 가. 인증의 표시는 제조되는 각각의 제품마다 하여야 한다.
 - 나. 표시방법은 별도 안내되는 성능인증 표시방법을 따른다.
 - 다. 표시는 설치 후 떨어지거나 지워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성능인증은 인증서에 기재된 제조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으로서 성능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8. 성능인증마크는 본래의 의미와 다르게 사용자가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방법으로 광고, 카탈로그 등에 사용하면 인증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됩니다.
9.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인증기관에 신청하여 인증서를 재발급 또는 변경내역 이면기재를 받아야 합니다.
 - 가. 상호, 대표자 또는 주소(소재지)의 변경
 - 나. 중대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변경(예: 모델명 변경, 파생모델의 추가, 변경 또는 삭제)
 - 다. 인증서의 분실 또는 훼손
10. 성능인증을 받은 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가. 성능인증표시 등 인증요건의 유지 관리
 - ※ 인증을 받기 이전 또는 정지·취소된 이후 생산된 제품에 성능인증 표시를 하면 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됨.
 - 나. 자체검사의 실시 및 그 기록관리
 - ※ 인증을 받은 자는 제품검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제품의 품질이 안전기준에 미달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11. 성능인증을 받은 자는 공장심사 또는 사후관리 공장방문 시 심사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성능인증서 (Products Certificate)

인증서번호
Ref. Cert. No.
KGS-22-032

신청인 : 한선엔지니어링(주)
License Holder

주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361로 27
Address
대표자 : 이제훈
CEO

공장명 : 한선엔지니어링(주)
Factory

소재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361로 27
Address

해당 규격명
Test Standard

시험된 제품시료는 우측

해당규격에 적합함을 증명함.

A sample of the product

was tested and found to be in conformity with (수소자동차 연료 공급 부품)

STANDARD

EDITION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018호

2020

시험품 Tested Product

제품명 :

Product Category

수소자동차 연료공급부품

- 대상품 : 피팅

- 사용압력 : 35 MPa

모델/형식구분 :

Model/Type Ref.

P-SUJ-F-4N-H35K-S6 /
Instrument Thread Fittings
Union Ball Joint NPT 1/4"

상표마크(해당하는 경우) :
Trademark (if any)

해당없음

공장심사 합격일

2022.05.10.

Factory Audit pass date

발행일자 : 2022.05.30.

Date of issuance

유효기간 : 해당없음

Validation

위 제품은 성능인증기준에 적합하므로 성능을 인증합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한국가스안전공사 ☎369-811 충북 음성군 맹동면 원중로 1390

Korea Gas Safety Corporation, 1390, Wonjung-ro, Maengdong-myeon, Eumseong-gun, Chungchongbuk-do Korea

Telephone: +82-(43)-750-1508, Fax: +82-(43)-750-1929

(별지 제5호 서식)(을)



변경내역 및 추가정보
[Additional information (if necessary)]

인증서번호
Ref. Cert. No.

KGS-22-032

[illegible]

한국가스안전공사 ☎369-811 충북 음성군 맹동면 원중로 1390

Korea Gas Safety Corporation, 1390, Wonjung-ro, Maengdong-myeon, Eumseong-gun, Chungchongbuk-do Korea
Telephone: +82-(43)-750-1508, Fax: +82-(43)-750-1929

성능인증을 받은 자가 준수할 유의사항

(KGS-22-032)

1. 성능인증의 유효기간 : 해당없음
2. 성능인증 재신청
 - 가. 인증의 유효기간이 경과되었을 경우(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1월 사이에 신청)
 - 나. 인증 받은 제품의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 규격 또는 재료가 변경되었을 경우
3. 사후관리
 - 가.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이 인증기준을 지속적으로 만족시키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성능인증일을 기준으로 매 1년 마다 사후관리를 실시(매년초 별도 안내공문 발송)
 - 나. 사후관리는 공사의 담당자가 제조업체를 방문하여 품질관리상태 점검(공정관리 등) 및 제품시험 실시
 - 동일 업체의 성능인증일이 서로 다른 품목의 사후관리는 가장 먼저 사후관리를 받아야 하는 품목의 사후관리일에 함께 실시
 - 다. 사후관리 계획을 통보받은 업체는 성능인증 신청서(사후관리 비용)를 제출하여 품목별 대표 모델(1년간 생산량이 가장 많은 모델 또는 생산 모델(호칭, 규격, 용량 등)에서 중앙값에 해당되는 것) 1개에 대하여 성능인증기준에서 정한 필수 시험항목에 대하여 제품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성능인증업체의 품질관리 상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성능인증 전체 모델에 대한 성능인증기준 모든 시험항목의 제품시험으로 사후관리를 대신할 수 있다.
4. 인증 받은 자의 의무
 - 가. 인증 업체는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이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① 업체명, 대표자 또는 양도, 양수 등으로 인한 법적 지위의 변경
 - ② 소재지 변경
 - ③ 성능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구조, 재료, 부품 등의 변경
 - ④ 외부업체가 변경된 경우
 - 나. 가의 규정에 의한 통보 사항이 성능인증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품목별 공사 담당자는 성능인증업체의 공정관리, 제품관리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결과 성능인증 제품의 품질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정조치가 될 때까지 성능인증마크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 다. 성능인증을 받은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약정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5. 성능인증의 취소 등 결과조치
 - 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성능인증을 취소 또는 정지 할 수 있다.
 - ① 성능변경을 수반하는 구조, 규격, 재료를 임의로 변경한 경우
 - ② 사후관리 제품시험 및 수거검사 결과 별표2에 따른 불량인 경우
 - ③ 4의 인증 받은 자의 의무 중 가항의 ③, ④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업체의 모든 인증 품목의 성능인증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 ① 사후관리를 거부한 경우
 - ② 성능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성능인증 표시를 한 경우 및 홍보한 경우
 - ③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인증서를 발급 받은 경우
 - ④ 4의 인증 받은 자의 의무 중 가항의 ①, ②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다. 성능인증의 취소를 받은 업체는 취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능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6. 인증의 표시방법
 - 가. 인증의 표시는 제조되는 각각의 제품마다 하여야 한다.
 - 나. 표시방법은 별도 안내되는 성능인증 표시방법을 따른다.
 - 다. 표시는 설치 후 떨어지거나 지워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성능인증은 인증서에 기재된 제조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으로서 성능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8. 성능인증마크는 본래의 의미와 다르게 사용자가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방법으로 광고, 카탈로그 등에 사용하면 인증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됩니다.
9.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인증기관에 신청하여 인증서를 재발급 또는 변경내역 이면기재를 받아야 합니다.
 - 가. 상호, 대표자 또는 주소(소재지)의 변경
 - 나. 중대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변경(예: 모델명 변경, 파생모델의 추가, 변경 또는 삭제)
 - 다. 인증서의 분실 또는 훼손
10. 성능인증을 받은 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가. 성능인증표시 등 인증요건의 유지 관리
 - * 인증을 받기 이전 또는 정지·취소된 이후 생산된 제품에 성능인증 표시를 하면 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됨.
 - 나. 자체검사의 실시 및 그 기록관리
 - * 인증을 받은 자는 제품검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제품의 품질이 안전기준에 미달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11. 성능인증을 받은 자는 공장심사 또는 사후관리 공장방문 시 심사업무가 원활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한국가스안전공사

Page 1 / 3

Number of Page

성능인증서 (Products Certificate)

인증서번호
Ref. Cert. No.

KGS-22-031

신청인 : 한선엔지니어링(주)

License Holder

주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361로 27

Address

대표자 : 이제훈

CEO

공장명 : 한선엔지니어링(주)

Factory

소재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361로 27

Address

해당 규격명

Test Standard

시험된 제품시료는 우측

해당규격에 적합함을 증명함.

A sample of the product

was tested and found to be in conformity with (수소자동차 연료 공급 부품)

STANDARD

EDITION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018호

2020

시험품 Tested Product

제품명 :

Product Category

수소자동차 연료공급부품

- 대상품 : 피팅

- 사용압력 : 35 MPa

모델/형식구분 :

Model/Type Ref.

STRF-12M-4N-H35K-S6 /
S-Lok Tube Fittings Female
Run Tee(12M × NPT 1/4")

상표마크(해당하는 경우) :
Trademark (if any)

해당없음

공장심사 합격일

2022.05.10.

Factory Audit pass date

발행일자 : 2022.05.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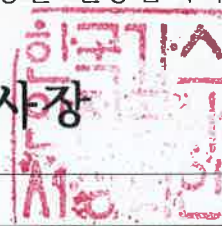
Date of issuance

유효기간 : 해당없음

Validation

위 제품은 성능인증기준에 적합하므로 성능을 인증합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한국가스안전공사 ☎369-811 충북 음성군 맹동면 원종로 1390

Korea Gas Safety Corporation, 1390, Wonjung-ro, Maengdong-myeon, Eumseong-gun, Chungchongbuk-do Korea

Telephone: +82-(43)-750-1508, Fax: +82-(43)-750-1929

(별지 제5호 서식)(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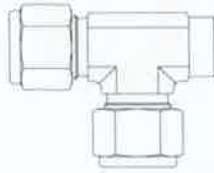
Page 2 / 3

Number of Page

변경내역 및 추가정보
[Additional information (if necessary)]

인증서번호
Ref. Cert. No.

KGS-22-031

일자 Date	내 용 substance			
2022.05.30	- 최초인증			
	No	Part name	Material	Q'ty
	1	Body	SS316	1
	2	Front Ferrule	SS316	2
	3	Back Ferrule	SS316	2
	4	Nut	SS316	2
				
	2022.5.30 유영민			



한국가스안전공사 ☎369-811 충북 음성군 맹동면 원종로 1390

Korea Gas Safety Corporation, 1390, Wonjung-ro, Maengdong-myeon, Eumseong-gun, Chungchongbuk-do Korea

Telephone: +82-(43)-750-1508, Fax: +82-(43)-750-1929

성능인증을 받은 자가 준수할 유의사항

(KGS-22-031)

1. 성능인증의 유효기간 : 해당없음
2. 성능인증 재신청
 - 가. 인증의 유효기간이 경과되었을 경우(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1월 사이에 신청)
 - 나. 인증 받은 제품의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 규격 또는 재료가 변경되었을 경우
3. 사후관리
 - 가.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이 인증기준을 지속적으로 만족시키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성능인증일을 기준으로 매 1년 마다 사후관리를 실시(매년초 별도 안내공문 발송)
 - 나. 사후관리는 공사의 담당자가 제조업체를 방문하여 품질관리상태 점검(공정관리 등) 및 제품시험 실시
 - 동일 업체의 성능인증일이 서로 다른 품목의 사후관리는 가장 먼저 사후관리를 받아야 하는 품목의 사후관리일에 함께 실시
 - 다. 사후관리 계획을 통보받은 업체는 성능인증 신청서(사후관리 비용)를 제출하여 품목별 대표 모델(1년간 생산량이 가장 많은 모델 또는 생산 모델(호칭, 규격, 용량 등)에서 중앙값에 해당되는 것) 1개에 대하여 성능인증기준에서 정한 필수 시험항목에 대하여 제품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성능인증업체의 품질관리 상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성능인증 전체 모델에 대한 성능인증기준 모든 시험항목의 제품시험으로 사후관리를 대신할 수 있다.
4. 인증 받은 자의 의무
 - 가. 인증 업체는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이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① 업체명, 대표자 또는 양도, 양수 등으로 인한 법적 지위의 변경
 - ② 소재지 변경
 - ③ 성능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구조, 재료, 부품 등의 변경
 - ④ 외부업체가 변경된 경우
 - 나. 가의 규정에 의한 통보 사항이 성능인증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품목별 공사 담당자는 성능인증업체의 공정관리, 제품관리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결과 성능인증 제품의 품질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정조치가 될 때까지 성능인증마크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 다. 성능인증을 받은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약정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5. 성능인증의 취소 등 결과조치
 - 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성능인증을 취소 또는 정지 할 수 있다.
 - ① 성능변경을 수반하는 구조, 규격, 재료를 임의로 변경한 경우
 - ② 사후관리 제품시험 및 수거검사 결과 별표2에 따른 불량인 경우
 - ③ 4의 인증 받은 자의 의무 중 가항의 ③, ④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업체의 모든 인증 품목의 성능인증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 ① 사후관리를 거부한 경우
 - ② 성능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성능인증 표시를 한 경우 및 홍보한 경우
 - ③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인증서를 발급 받은 경우
 - ④ 4의 인증 받은 자의 의무 중 가항의 ①, ②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다. 성능인증의 취소를 받은 업체는 취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능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6. 인증의 표시방법
 - 가. 인증의 표시는 제조되는 각각의 제품마다 하여야 한다.
 - 나. 표시방법은 별도 안내되는 성능인증 표시방법을 따른다.
 - 다. 표시는 설치 후 떨어지거나 지워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성능인증은 인증서에 기재된 제조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으로서 성능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8. 성능인증마크는 본래의 의미와 다르게 사용자가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방법으로 광고, 카탈로그 등에 사용하면 인증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됩니다.
9.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인증기관에 신청하여 인증서를 재발급 또는 변경내역 이면기재를 받아야 합니다.
 - 가. 상호, 대표자 또는 주소(소재지)의 변경
 - 나. 중대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변경(예: 모델명 변경, 파생모델의 추가, 변경 또는 삭제)
 - 다. 인증서의 분실 또는 훼손
10. 성능인증을 받은 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가. 성능인증표시 등 인증요건의 유지 관리
 - ※ 인증을 받기 이전 또는 정지·취소된 이후 생산된 제품에 성능인증 표시를 하면 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됨.
 - 나. 자체검사의 실시 및 그 기록관리
 - ※ 인증을 받은 자는 제품검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제품의 품질이 안전기준에 미달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11. 성능인증을 받은 자는 공장심사 또는 사후관리 공장방문 시 심사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성능인증서 (Products Certificate)

인증서번호
Ref. Cert. No.

KGS-22-030

신청인 : 한선엔지니어링(주)
License Holder

주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361로 27
Address
대표자 : 이제훈
CEO

공장명 : 한선엔지니어링(주)
Factory

소재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361로 27
Address

해당 규격명
Test Standard

시험된 제품시료는 우측

해당규격에 적합함을 증명함.

A sample of the product

was tested and found to be in conformity with (수소자동차 연료 공급 부품)

STANDARD

EDITION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018호

2020

시험품 Tested Product

제품명 :

Product Category

수소자동차 연료공급부품

- 대상품 : 피팅

- 사용압력 : 35 MPa

모델/형식구분 :

Model/Type Ref.

STRF-8M-4N-H35K-S6 /
S-Lok Tube Fittings Female
Run Tee(8M × NPT 1/4")

상표마크(해당하는 경우) :
Trademark (if any)

해당없음

공장심사 합격일

2022.05.10.

Factory Audit pass date

발행일자 : 2022.05.30.

Date of issuance

유효기간 : 해당없음

Validation

위 제품은 성능인증기준에 적합하므로 성능을 인증합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한국가스안전공사 ☎369-811 충북 음성군 맹동면 원종로 1390

Korea Gas Safety Corporation, 1390, Wonjung-ro, Maengdong-myeon, Eumseong-gun, Chungchongbuk-do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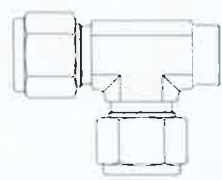
Telephone: +82-(43)-750-1508, Fax: +82-(43)-750-1929

변경내역 및 추가정보

[Additional information (if necessary)]

인증서번호
Ref. Cert. No.

KGS-22-030

일자 Date	내 용 substance			
2022.05.30	- 최초인증			
	No	Part name	Material	Q'ty
	1	Body	SS316	1
	2	Front Ferrule	SS316	2
	3	Back Ferrule	SS316	2
	4	Nut	SS316	2
				
	2022.5.30 원상복구			

성능인증을 받은 자가 준수할 유의사항

(KGS-22-030)

1. 성능인증의 유효기간 : 해당없음
2. 성능인증 재신청
 - 가. 인증의 유효기간이 경과되었을 경우(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1월 사이에 신청)
 - 나. 인증 받은 제품의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 규격 또는 재료가 변경되었을 경우
3. 사후관리
 - 가.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이 인증기준을 지속적으로 만족시키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성능인증일을 기준으로 매 1년 마다 사후관리를 실시(매년초 별도 안내공문 발송)
 - 나. 사후관리는 공사의 담당자가 제조업체를 방문하여 품질관리상태 점검(공정관리 등) 및 제품시험 실시
 - 동일 업체의 성능인증일이 서로 다른 품목의 사후관리는 가장 먼저 사후관리를 받아야 하는 품목의 사후관리일에 함께 실시
 - 다. 사후관리 계획을 통보받은 업체는 성능인증 신청서(사후관리 비용)를 제출하여 품목별 대표 모델(1년간 생산량이 가장 많은 모델 또는 생산 모델(호칭, 규격, 용량 등)에서 중앙값에 해당되는 것) 1개에 대하여 성능인증기준에서 정한 필수 시험항목에 대하여 제품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성능인증업체의 품질관리 상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성능인증 전체 모델에 대한 성능인증기준 모든 시험항목의 제품시험으로 사후관리를 대신할 수 있다.
4. 인증 받은 자의 의무
 - 가. 인증 업체는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이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① 업체명, 대표자 또는 양도, 양수 등으로 인한 법적 지위의 변경
 - ② 소재지 변경
 - ③ 성능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구조, 재료, 부품 등의 변경
 - ④ 외주업체가 변경된 경우
 - 나. 가의 규정에 의한 통보 사항이 성능인증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품목별 공사 담당자는 성능인증업체의 공정관리, 제품관리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결과 성능인증 제품의 품질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정조치가 될 때까지 성능인증마크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 다. 성능인증을 받은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약정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5. 성능인증의 취소 등 결과조치
 - 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성능인증을 취소 또는 정지 할 수 있다.
 - ① 성능변경을 수반하는 구조, 규격, 재료를 임의로 변경한 경우
 - ② 사후관리 제품시험 및 수거검사 결과 별표2에 따른 불량인 경우
 - ③ 4의 인증 받은 자의 의무 중 가항의 ③, ④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업체의 모든 인증 품목의 성능인증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 ① 사후관리를 거부한 경우
 - ② 성능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성능인증 표시를 한 경우 및 홍보한 경우
 - ③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인증서를 발급 받은 경우
 - ④ 4의 인증 받은 자의 의무 중 가항의 ①, ②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다. 성능인증의 취소를 받은 업체는 취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능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6. 인증의 표시방법
 - 가. 인증의 표시는 제조되는 각각의 제품마다 하여야 한다.
 - 나. 표시방법은 별도 안내되는 성능인증 표시방법을 따른다.
 - 다. 표시는 설치 후 떨어지거나 지워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성능인증은 인증서에 기재된 제조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으로서 성능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8. 성능인증마크는 본래의 의미와 다르게 사용자가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방법으로 광고, 카탈로그 등에 사용하면 인증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됩니다.
9.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인증기관에 신청하여 인증서를 재발급 또는 변경내역 이면기재를 받아야 합니다.
 - 가. 상호, 대표자 또는 주소(소재지)의 변경
 - 나. 중대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변경(예: 모델명 변경, 파생모델의 추가, 변경 또는 삭제)
 - 다. 인증서의 분실 또는 훼손
10. 성능인증을 받은 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가. 성능인증표시 등 인증요건의 유지 관리
 - ※ 인증을 받기 이전 또는 정지·취소된 이후 생산된 제품에 성능인증 표시를 하면 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됨.
 - 나. 자체검사의 실시 및 그 기록관리
 - ※ 인증을 받은 자는 제품검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제품의 품질이 안전기준에 미달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11. 성능인증을 받은 자는 공장심사 또는 사후관리 공장방문 시 심사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성능인증서

(Products Certificate)

인증서번호
Ref. Cert. No.

KGS-22-029

신청인 : 한선엔지니어링(주)

License Holder

주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361로 27

Address

대표자 : 이제훈

CEO

공장명 : 한선엔지니어링(주)

Factory

소재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361로 27

Address

해당 규격명

Test Standard

시험된 제품시료는 우측

해당규격에 적합함을 증명함.

A sample of the product

was tested and found to be in conformity with

STANDARD

EDITION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018호

2020

(수소자동차 연료 공급 부품)

시험품 Tested Product

제품명 :

Product Category

수소자동차 연료공급부품

- 대상품 : 피팅

- 사용압력 : 35 MPa

모델/형식구분 :

Model/Type Ref.

STRF-4-4N-H35K-S6 /
S-Lok Tube Fittings Female
Run Tee(1/4" × NPT 1/4")

상표마크(해당하는 경우) :
Trademark (if any)

해당없음

공장심사 합격일

2022.05.10.

Factory Audit pass date

발행일자 : 2022.05.30.

Date of issuance

유효기간 : 해당없음

Validation

위 제품은 성능인증기준에 적합하므로 성능을 인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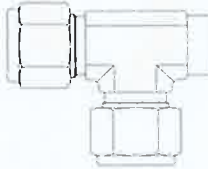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변경내역 및 추가정보
[Additional information (if necessary)]

인증서번호
Ref. Cert. No.

KGS-22-029

일자 Date	내 용 substance			
2022.05.30	- 최초인증			
	No	Part name	Material	Q'ty
	1	Body	SS316	1
	2	Front Ferrule	SS316	2
	3	Back Ferrule	SS316	2
	4	Nut	SS316	2
				
	2022.5.30 			



한국가스안전공사 ☎369-811 충북 음성군 맹동면 원종로 1390

Korea Gas Safety Corporation, 1390, Wonjung-ro, Maengdong-myeon, Eumseong-gun, Chungchongbuk-do Korea
Telephone: +82-(43)-750-1508, Fax: +82-(43)-750-1929

성능인증을 받은 자가 준수할 유의사항 (KGS-22-029)

1. 성능인증의 유효기간 : 해당없음
2. 성능인증 재신청
 - 가. 인증의 유효기간이 경과되었을 경우(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1월 사이에 신청)
 - 나. 인증 받은 제품의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 규격 또는 재료가 변경되었을 경우
3. 사후관리
 - 가.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이 인증기준을 지속적으로 만족시키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성능인증일을 기준으로 매 1년 마다 사후관리를 실시(매년초 별도 안내공문 발송)
 - 나. 사후관리는 공사의 담당자가 제조업체를 방문하여 품질관리상태 점검(공정관리 등) 및 제품시험 실시
 - 동일 업체의 성능인증일이 서로 다른 품목의 사후관리는 가장 먼저 사후관리를 받아야 하는 품목의 사후관리일에 함께 실시
 - 다. 사후관리 계획을 통보받은 업체는 성능인증 신청서(사후관리 비용)를 제출하여 품목별 대표 모델(1년간 생산량이 가장 많은 모델 또는 생산 모델(호칭, 규격, 용량 등)에서 중앙값에 해당되는 것) 1개에 대하여 성능인증기준에서 정한 필수 시험항목에 대하여 제품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성능인증업체의 품질관리 상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성능인증 전체 모델에 대한 성능인증기준 모든 시험항목의 제품시험으로 사후관리를 대신할 수 있다.
4. 인증 받은 자의 의무
 - 가. 인증 업체는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이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① 업체명, 대표자 또는 양도, 양수 등으로 인한 법적 지위의 변경
 - ② 소재지 변경
 - ③ 성능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구조, 재료, 부품 등의 변경
 - ④ 외부업체가 변경된 경우
 - 나. 가의 규정에 의한 통보 사항이 성능인증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품목별 공사 담당자는 성능인증업체의 공정관리, 제품관리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결과 성능인증 제품의 품질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정조치가 될 때까지 성능인증마크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 다. 성능인증을 받은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약정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5. 성능인증의 취소 등 결과조치
 - 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성능인증을 취소 또는 정지 할 수 있다.
 - ① 성능변경을 수반하는 구조, 규격, 재료를 임의로 변경한 경우
 - ② 사후관리 제품시험 및 수거검사 결과 별표2에 따른 불량인 경우
 - ③ 4의 인증 받은 자의 의무 중 가항의 ③, ④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업체의 모든 인증 품목의 성능인증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 ① 사후관리를 거부한 경우
 - ② 성능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성능인증 표시를 한 경우 및 홍보한 경우
 - ③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인증서를 발급 받은 경우
 - ④ 4의 인증 받은 자의 의무 중 가항의 ①, ②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다. 성능인증의 취소를 받은 업체는 취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능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6. 인증의 표시방법
 - 가. 인증의 표시는 제조되는 각각의 제품마다 하여야 한다.
 - 나. 표시방법은 별도 안내되는 성능인증 표시방법을 따른다.
 - 다. 표시는 설치 후 떨어지거나 지워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성능인증은 인증서에 기재된 제조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으로서 성능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8. 성능인증마크는 본래의 의미와 다르게 사용자가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방법으로 광고, 카탈로그 등에 사용하면 인증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됩니다.
9.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인증기관에 신청하여 인증서를 재발급 또는 변경내역 이면기재를 받아야 합니다.
 - 가. 상호, 대표자 또는 주소(소재지)의 변경
 - 나. 중대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변경(예: 모델명 변경, 파생모델의 추가, 변경 또는 삭제)
 - 다. 인증서의 분실 또는 훼손
10. 성능인증을 받은 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가. 성능인증표시 등 인증요건의 유지 관리
 - ※ 인증을 받기 이전 또는 정지·취소된 이후 생산된 제품에 성능인증 표시를 하면 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됨.
 - 나. 자체검사의 실시 및 그 기록관리
 - ※ 인증을 받은 자는 제품검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제품의 품질이 안전기준에 미달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11. 성능인증을 받은 자는 공장심사 또는 사후관리 공장방문 시 심사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성능인증서 (Products Certificate)

인증서번호
Ref. Cert. No.

KGS-22-028

신청인 : 한선엔지니어링(주)
License Holder

주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361로 27
Address
대표자 : 이제훈
CEO

공장명 : 한선엔지니어링(주)
Factory

소재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361로 27
Address

해당 규격명
Test Standard

시험된 제품시료는 우측

해당규격에 적합함을 증명함.

A sample of the product

was tested and found to be (수소자동차 연료 공급 부품)
in conformity with

STANDARD

EDITION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018호

2020

시험품 Tested Product

제품명 :

Product Category

수소자동차 연료공급부품

- 대상품 : 피팅

- 사용압력 : 35 MPa

모델/형식구분 :

Model/Type Ref.

STRM-12M-4N-H35K-S6 /
S-Lok Tube Fittings Male
Run Tee(12M × NPT 1/4")

상표마크(해당하는 경우) :
Trademark (if any)

해당없음

공장심사 합격일

2022.05.10.

Factory Audit pass date

발행일자 : 2022.05.30.

Date of issuance

유효기간 : 해당없음

Validation

위 제품은 성능인증기준에 적합하므로 성능을 인증합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한국가스안전공사 ☎369-811 충북 음성군 맹동면 원종로 1390

Korea Gas Safety Corporation, 1390, Wonjung-ro, Maengdong-myeon, Eumseong-gun, Chungchongbuk-do Korea

Telephone: +82-(43)-750-1508, Fax: +82-(43)-750-1929

(별지 제5호 서식)(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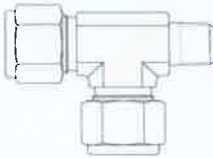
Page 2 / 3

Number of Page

변경내역 및 추가정보
[Additional information (if necessary)]

인증서번호
Ref. Cert. No.

KGS-22-028

일자 Date	내 용 substance			
2022.05.30	- 최초인증			
	No	Part name	Material	Q'ty
	1	Body	SS316	1
	2	Front Ferrule	SS316	2
	3	Back Ferrule	SS316	2
	4	Nut	SS316	2
				
	2022.5.30 윤영근			



한국가스안전공사 ☎369-811 충북 음성군 맹동면 원중로 1390

Korea Gas Safety Corporation, 1390, Wonjung-ro, Maengdong-myeon, Eumseong-gun, Chungchongbuk-do Korea
Telephone: +82-(43)-750-1508, Fax: +82-(43)-750-1929

성능인증을 받은 자가 준수할 유의사항 (KGS-22-028)

1. 성능인증의 유효기간 : 해당없음
2. 성능인증 재신청
 - 가. 인증의 유효기간이 경과되었을 경우(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1월 사이에 신청)
 - 나. 인증 받은 제품의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 규격 또는 재료가 변경되었을 경우
3. 사후관리
 - 가.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이 인증기준을 지속적으로 만족시키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성능인증일을 기준으로 매 1년 마다 사후관리를 실시(매년초 별도 안내공문 발송)
 - 나. 사후관리는 공사의 담당자가 제조업체를 방문하여 품질관리상태 점검(공정관리 등) 및 제품시험 실시
 - 동일 업체의 성능인증일이 서로 다른 품목의 사후관리는 가장 먼저 사후관리를 받아야 하는 품목의 사후관리일에 함께 실시
 - 다. 사후관리 계획을 통보받은 업체는 성능인증 신청서(사후관리 비용)를 제출하여 품목별 대표 모델(1년간 생산량이 가장 많은 모델 또는 생산 모델(호칭, 규격, 용량 등)에서 중앙값에 해당되는 것) 1개에 대하여 성능인증기준에서 정한 필수 시험항목에 대하여 제품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성능인증업체의 품질관리 상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성능인증 전체 모델에 대한 성능인증기준 모든 시험항목의 제품시험으로 사후관리를 대신할 수 있다.
4. 인증 받은 자의 의무
 - 가. 인증 업체는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이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① 업체명, 대표자 또는 양도, 양수 등으로 인한 법적 지위의 변경
 - ② 소재지 변경
 - ③ 성능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구조, 재료, 부품 등의 변경
 - ④ 외주업체가 변경된 경우
 - 나. 가의 규정에 의한 통보 사항이 성능인증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품목별 공사 담당자는 성능인증업체의 공정관리, 제품관리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결과 성능인증 제품의 품질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정조치가 될 때까지 성능인증마크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 다. 성능인증을 받은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약정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5. 성능인증의 취소 등 결과조치
 - 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성능인증을 취소 또는 정지 할 수 있다.
 - ① 성능변경을 수반하는 구조, 규격, 재료를 임의로 변경한 경우
 - ② 사후관리 제품시험 및 수거검사 결과 별표2에 따른 불량인 경우
 - ③ 4의 인증 받은 자의 의무 중 가항의 ③, ④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업체의 모든 인증 품목의 성능인증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 ① 사후관리를 거부한 경우
 - ② 성능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성능인증 표시를 한 경우 및 홍보한 경우
 - ③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인증서를 발급 받은 경우
 - ④ 4의 인증 받은 자의 의무 중 가항의 ①, ②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다. 성능인증의 취소를 받은 업체는 취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능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6. 인증의 표시방법
 - 가. 인증의 표시는 제조되는 각각의 제품마다 하여야 한다.
 - 나. 표시방법은 별도 안내되는 성능인증 표시방법을 따른다.
 - 다. 표시는 설치 후 떨어지거나 지워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성능인증은 인증서에 기재된 제조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으로서 성능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8. 성능인증마크는 본래의 의미와 다르게 사용자가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방법으로 광고, 카탈로그 등에 사용하면 인증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됩니다.
9.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인증기관에 신청하여 인증서를 재발급 또는 변경내역 이면기재를 받아야 합니다.
 - 가. 상호, 대표자 또는 주소(소재지)의 변경
 - 나. 중대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변경(예: 모델명 변경, 파생모델의 추가, 변경 또는 삭제)
 - 다. 인증서의 분실 또는 훼손
10. 성능인증을 받은 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가. 성능인증표시 등 인증요건의 유지 관리
 - ※ 인증을 받기 이전 또는 정지·취소된 이후 생산된 제품에 성능인증 표시를 하면 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됨.
 - 나. 자체검사의 실시 및 그 기록관리
 - ※ 인증을 받은 자는 제품검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제품의 품질이 안전기준에 미달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11. 성능인증을 받은 자는 공장심사 또는 사후관리 공장방문 시 심사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한국가스안전공사

Page 1 / 3

Number of Page

성능인증서 (Products Certificate)

인증서번호
Ref. Cert. No.

KGS-22-027

신청인 : 한선엔지니어링(주)

License Holder

주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361로 27

Address

대표자 : 이제훈

CEO

공장명 : 한선엔지니어링(주)

Factory

소재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361로 27

Address

해당 규격명

Test Standard

시험된 제품시료는 우측

해당규격에 적합함을 증명함.

A sample of the product

was tested and found to be in conformity with

STANDARD

EDITION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018호

2020

(수소자동차 연료 공급 부품)

시험품 Tested Product

제품명 :

Product Category

수소자동차 연료공급부품

- 대상품 : 피팅

- 사용압력 : 35 MPa

모델/형식구분 :

Model/Type Ref.

STRM-8M-4N-H35K-S6 /
S-Lok Tube Fittings Male
Run Tee(8M × NPT 1/4")

상표마크(해당하는 경우) :
Trademark (if any)

해당없음

공장심사 합격일

2022.05.10.

Factory Audit pass date

발행일자 : 2022.05.30.

Date of issuance

유효기간 : 해당없음

Validation

위 제품은 성능인증기준에 적합하므로 성능을 인증합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한국가스안전공사 ☎369-811 충북 음성군 맹동면 원종로 1390

Korea Gas Safety Corporation, 1390, Wonjung-ro, Maengdong-myeon, Eumseong-gun, Chungchongbuk-do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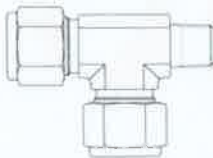
Telephone: +82-(43)-750-1508, Fax: +82-(43)-750-1929

변경내역 및 추가정보

[Additional information (if necessary)]

인증서번호
Ref. Cert. No.

KGS-22-027

일자 Date	내 용 substance			
2022.05.30	- 최초인증			
	No	Part name	Material	Q'ty
	1	Body	SS316	1
	2	Front Ferrule	SS316	2
	3	Back Ferrule	SS316	2
	4	Nut	SS316	2
	 2022.5.30 <i>유영-3</i>			



한국가스안전공사 ☎369-811 충북 음성군 맹동면 원중로 1390

Korea Gas Safety Corporation, 1390, Wonjung-ro, Maengdong-myeon, Eumseong-gun, Chungchongbuk-do Korea

Telephone: +82-(43)-750-1508, Fax: +82-(43)-750-1929

성능인증을 받은 자가 준수할 유의사항 (KGS-22-027)

1. 성능인증의 유효기간 : 해당없음
2. 성능인증 재신청
 - 가. 인증의 유효기간이 경과되었을 경우(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1월 사이에 신청)
 - 나. 인증 받은 제품의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 규격 또는 재료가 변경되었을 경우
3. 사후관리
 - 가.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이 인증기준을 지속적으로 만족시키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성능인증일을 기준으로 매 1년 마다 사후관리를 실시(매년초 별도 안내공문 발송)
 - 나. 사후관리는 공사의 담당자가 제조업체를 방문하여 품질관리상태 점검(공정관리 등) 및 제품시험 실시
 - 동일 업체의 성능인증일이 서로 다른 품목의 사후관리는 가장 먼저 사후관리를 받아야 하는 품목의 사후관리일에 함께 실시
 - 다. 사후관리 계획을 통보받은 업체는 성능인증 신청서(사후관리 비용)를 제출하여 품목별 대표 모델(1년간 생산량이 가장 많은 모델 또는 생산 모델(호칭, 규격, 용량 등)에서 중앙값에 해당되는 것) 1개에 대하여 성능인증기준에서 정한 필수 시험항목에 대하여 제품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성능인증업체의 품질관리 상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성능인증 전체 모델에 대한 성능인증기준 모든 시험항목의 제품시험으로 사후관리를 대신할 수 있다.
4. 인증 받은 자의 의무
 - 가. 인증 업체는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이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① 업체명, 대표자 또는 양도, 양수 등으로 인한 법적 지위의 변경
 - ② 소재지 변경
 - ③ 성능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구조, 재료, 부품 등의 변경
 - ④ 외부업체가 변경된 경우
 - 나. 가의 규정에 의한 통보 사항이 성능인증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품목별 공사 담당자는 성능인증업체의 공정관리, 제품관리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결과 성능인증 제품의 품질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정조치가 될 때까지 성능인증마크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 다. 성능인증을 받은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약정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5. 성능인증의 취소 등 결과조치
 - 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성능인증을 취소 또는 정지 할 수 있다.
 - ① 성능변경을 수반하는 구조, 규격, 재료를 임의로 변경한 경우
 - ② 사후관리 제품시험 및 수거검사 결과 별표2에 따른 불량인 경우
 - ③ 4의 인증 받은 자의 의무 중 가항의 ③, ④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업체의 모든 인증 품목의 성능인증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 ① 사후관리를 거부한 경우
 - ② 성능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성능인증 표시를 한 경우 및 홍보한 경우
 - ③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인증서를 발급 받은 경우
 - ④ 4의 인증 받은 자의 의무 중 가항의 ①, ②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다. 성능인증의 취소를 받은 업체는 취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능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6. 인증의 표시방법
 - 가. 인증의 표시는 제조되는 각각의 제품마다 하여야 한다.
 - 나. 표시방법은 별도 안내되는 성능인증 표시방법을 따른다.
 - 다. 표시는 설치 후 떨어지거나 지워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성능인증은 인증서에 기재된 제조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으로서 성능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8. 성능인증마크는 본래의 의미와 다르게 사용자가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방법으로 광고, 카탈로그 등에 사용하면 인증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됩니다.
9.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인증기관에 신청하여 인증서를 재발급 또는 변경내역 이면기재를 받아야 합니다.
 - 가. 상호, 대표자 또는 주소(소재지)의 변경
 - 나. 중대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변경(예: 모델명 변경, 파생모델의 추가, 변경 또는 삭제)
 - 다. 인증서의 분실 또는 훼손
10. 성능인증을 받은 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가. 성능인증표시 등 인증요건의 유지 관리
 - ※ 인증을 받기 이전 또는 정지·취소된 이후 생산된 제품에 성능인증 표시를 하면 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됨.
 - 나. 자체검사의 실시 및 그 기록관리
 - ※ 인증을 받은 자는 제품검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제품의 품질이 안전기준에 미달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11. 성능인증을 받은 자는 공장심사 또는 사후관리 공장방문 시 심사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한국가스안전공사

Page 1 / 3

Number of Page

성능인증서 (Products Certificate)

인증서번호
Ref. Cert. No.

KGS-22-026

신청인 : 한선엔지니어링(주)

License Holder

주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361로 27

Address

대표자 : 이제훈

CEO

공장명 : 한선엔지니어링(주)

Factory

소재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361로 27

Address

해당 규격명

Test Standard

시험된 제품시료는 우측

해당규격에 적합함을 증명함.

A sample of the product

was tested and found to be in conformity with (수소자동차 연료 공급 부품)

STANDARD

EDITION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018호

2020

시험품 Tested Product

제품명 :

Product Category

수소자동차 연료공급부품

- 대상품 : 피팅

- 사용압력 : 35 MPa

모델/형식구분 :

Model/Type Ref.

STRM-4-4N-H35K-S6 /
S-Lok Tube Fittings Male
Run Tee(1/4" × NPT 1/4")

상표마크(해당하는 경우) :
Trademark (if any)

해당없음

공장심사 합격일

2022.05.10.

Factory Audit pass date

발행일자 : 2022.05.30.

Date of issuance

유효기간 : 해당없음

Validation

위 제품은 성능인증기준에 적합하므로 성능을 인증합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한국가스안전공사 ☎369-811 충북 음성군 맹동면 원종로 1390

Korea Gas Safety Corporation, 1390, Wonjung-ro, Maengdong-myeon, Eumseong-gun, Chungchongbuk-do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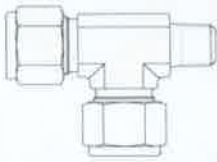
Telephone: +82-(43)-750-1508, Fax: +82-(43)-750-1929

변경내역 및 추가정보

[Additional information (if necessary)]

인증서번호
Ref. Cert. No.

KGS-22-026

일자 Date	내 용 substance			
2022.05.30	- 최초인증			
	No	Part name	Material	Q'ty
	1	Body	SS316	1
	2	Front Ferrule	SS316	2
	3	Back Ferrule	SS316	2
	4	Nut	SS316	2
	 2022.5.30 윤영근			



한국가스안전공사 ☎369-811 충북 음성군 맹동면 원중로 1390

Korea Gas Safety Corporation, 1390, Wonjung-ro, Maengdong-myeon, Eumseong-gun, Chungchongbuk-do Korea
Telephone: +82-(43)-750-1508, Fax: +82-(43)-750-1929

성능인증을 받은 자가 준수할 유의사항 (KGS-22-026)

1. 성능인증의 유효기간 : 해당없음
2. 성능인증 재신청
 - 가. 인증의 유효기간이 경과되었을 경우(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1월 사이에 신청)
 - 나. 인증 받은 제품의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 규격 또는 재료가 변경되었을 경우
3. 사후관리
 - 가.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이 인증기준을 지속적으로 만족시키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성능인증일을 기준으로 매 1년 마다 사후관리를 실시(매년초 별도 안내공문 발송)
 - 나. 사후관리는 공사의 담당자가 제조업체를 방문하여 품질관리상태 점검(공정관리 등) 및 제품시험 실시
 - 동일 업체의 성능인증일이 서로 다른 품목의 사후관리는 가장 먼저 사후관리를 받아야 하는 품목의 사후관리일에 함께 실시
 - 다. 사후관리 계획을 통보받은 업체는 성능인증 신청서(사후관리 비용)를 제출하여 품목별 대표 모델(1년간 생산량이 가장 많은 모델 또는 생산 모델(호칭, 규격, 용량 등)에서 중앙값에 해당되는 것) 1개에 대하여 성능인증기준에서 정한 필수 시험항목에 대하여 제품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성능인증업체의 품질관리 상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성능인증 전체 모델에 대한 성능인증기준 모든 시험항목의 제품시험으로 사후관리를 대신할 수 있다.
4. 인증 받은 자의 의무
 - 가. 인증 업체는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이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① 업체명, 대표자 또는 양도, 양수 등으로 인한 법적 지위의 변경
 - ② 소재지 변경
 - ③ 성능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구조, 재료, 부품 등의 변경
 - ④ 외부업체가 변경된 경우
 - 나. 가의 규정에 의한 통보 사항이 성능인증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품목별 공사 담당자는 성능인증업체의 공정관리, 제품관리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결과 성능인증 제품의 품질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정조치가 될 때까지 성능인증마크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 다. 성능인증을 받은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약정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5. 성능인증의 취소 등 결과조치
 - 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성능인증을 취소 또는 정지 할 수 있다.
 - ① 성능변경을 수반하는 구조, 규격, 재료를 임의로 변경한 경우
 - ② 사후관리 제품시험 및 수거검사 결과 별표2에 따른 불량인 경우
 - ③ 4의 인증 받은 자의 의무 중 가항의 ③, ④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업체의 모든 인증 품목의 성능인증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 ① 사후관리를 거부한 경우
 - ② 성능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성능인증 표시를 한 경우 및 홍보한 경우
 - ③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인증서를 발급 받은 경우
 - ④ 4의 인증 받은 자의 의무 중 가항의 ①, ②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다. 성능인증의 취소를 받은 업체는 취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능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6. 인증의 표시방법
 - 가. 인증의 표시는 제조되는 각각의 제품마다 하여야 한다.
 - 나. 표시방법은 별도 안내되는 성능인증 표시방법을 따른다.
 - 다. 표시는 설치 후 떨어지거나 지워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성능인증은 인증서에 기재된 제조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으로서 성능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8. 성능인증마크는 본래의 의미와 다르게 사용자가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방법으로 광고, 카탈로그 등에 사용하면 인증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된다.
9.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인증기관에 신청하여 인증서를 재발급 또는 변경내역 이면기재를 받아야 합니다.
 - 가. 상호, 대표자 또는 주소(소재지)의 변경
 - 나. 중대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변경(예: 모델명 변경, 파생모델의 추가, 변경 또는 삭제)
 - 다. 인증서의 분실 또는 훼손
10. 성능인증을 받은 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가. 성능인증표시 등 인증요건의 유지 관리
 - ※ 인증을 받기 이전 또는 정지·취소된 이후 생산된 제품에 성능인증 표시를 하면 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됨.
 - 나. 자체검사의 실시 및 그 기록관리
 - ※ 인증을 받은 자는 제품검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제품의 품질이 안전기준에 미달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11. 성능인증을 받은 자는 공장심사 또는 사후관리 공장방문 시 심사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한국가스안전공사

Page 1 / 3

Number of Page

성능인증서 (Products Certificate)

인증서번호
Ref. Cert. No.

KGS-22-025

신청인 : 한선엔지니어링(주)

License Holder

주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361로 27

Address

대표자 : 이제훈

CEO

공장명 : 한선엔지니어링(주)

Factory

소재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361로 27

Address

해당규격명

Test Standard

시험된 제품시료는 우측

해당규격에 적합함을 증명함.

A sample of the product

was tested and found to be in conformity with (수소자동차 연료 공급 부품)

STANDARD

EDITION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018호

2020

시험품 Tested Product

제품명 :

Product Category

수소자동차 연료공급부품

- 대상품 : 피팅

- 사용압력 : 35 MPa

모델/형식구분 :

Model/Type Ref.

SX-16M-H35K-S6 / S-Lok

Tube Fittings Union Cross(16M)

상표마크(해당하는 경우) :

Trademark (if any)

해당없음

공장심사 합격일

2022.05.10.

Factory Audit pass date

발행일자 : 2022.05.30.

Date of issuance

유효기간 : 해당없음

Validation

위 제품은 성능인증기준에 적합하므로 성능을 인증합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한국가스안전공사 ☎369-811 충북 음성군 맹동면 원종로 1390

Korea Gas Safety Corporation, 1390, Wonjung-ro, Maengdong-myeon, Eumseong-gun, Chungchongbuk-do Korea

Telephone: +82-(43)-750-1508, Fax: +82-(43)-750-1929

(별지 제5호 서식)(을)



변경내역 및 추가정보
[Additional information (if necessary)]

인증서번호
Ref. Cert. No.

KGS-22-025

[illegible]

한국가스안전공사 ☎369-811 충북 음성군 맹동면 원중로 1390

Korea Gas Safety Corporation, 1390, Wonjung-ro, Maengdong-myeon, Eumseong-gun, Chungchongbuk-do Korea
Telephone: +82-(43)-750-1508, Fax: +82-(43)-750-1929

성능인증을 받은 자가 준수할 유의사항 (KGS-22-025)

1. 성능인증의 유효기간 : 해당없음
2. 성능인증 재신청
 - 가. 인증의 유효기간이 경과되었을 경우(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1월 사이에 신청)
 - 나. 인증 받은 제품의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 규격 또는 재료가 변경되었을 경우
3. 사후관리
 - 가.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이 인증기준을 지속적으로 만족시키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성능인증일을 기준으로 매 1년 마다 사후관리를 실시(매년초 별도 안내공문 발송)
 - 나. 사후관리는 공사의 담당자가 제조업체를 방문하여 품질관리상태 점검(공정관리 등) 및 제품시험 실시
 - 동일 업체의 성능인증일이 서로 다른 품목의 사후관리는 가장 먼저 사후관리를 받아야 하는 품목의 사후관리일에 함께 실시
 - 다. 사후관리 계획을 통보받은 업체는 성능인증 신청서(사후관리 비용)를 제출하여 품목별 대표 모델(1년간 생산량이 가장 많은 모델 또는 생산 모델(호칭, 규격, 용량 등)에서 중앙값에 해당되는 것) 1개에 대하여 성능인증기준에서 정한 필수 시험항목에 대하여 제품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성능인증업체의 품질관리 상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성능인증 전체 모델에 대한 성능인증기준 모든 시험항목의 제품시험으로 사후관리를 대신할 수 있다.
4. 인증 받은 자의 의무
 - 가. 인증 업체는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이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① 업체명, 대표자 또는 양도, 양수 등으로 인한 법적 지위의 변경
 - ② 소재지 변경
 - ③ 성능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구조, 재료, 부품 등의 변경
 - ④ 외주업체가 변경된 경우
 - 나. 가의 규정에 의한 통보 사항이 성능인증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품목별 공사 담당자는 성능인증업체의 공정관리, 제품관리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결과 성능인증 제품의 품질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정조치가 될 때까지 성능인증마크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 다. 성능인증을 받은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약정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5. 성능인증의 취소 등 결과조치
 - 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성능인증을 취소 또는 정지 할 수 있다.
 - ① 성능변경을 수반하는 구조, 규격, 재료를 임의로 변경한 경우
 - ② 사후관리 제품시험 및 수거검사 결과 별표2에 따른 불량인 경우
 - ③ 4의 인증 받은 자의 의무 중 가항의 ③, ④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업체의 모든 인증 품목의 성능인증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 ① 사후관리를 거부한 경우
 - ② 성능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성능인증 표시를 한 경우 및 홍보한 경우
 - ③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인증서를 발급 받은 경우
 - ④ 4의 인증 받은 자의 의무 중 가항의 ①, ②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다. 성능인증의 취소를 받은 업체는 취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능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6. 인증의 표시방법
 - 가. 인증의 표시는 제조되는 각각의 제품마다 하여야 한다.
 - 나. 표시방법은 별도 안내되는 성능인증 표시방법을 따른다.
 - 다. 표시는 설치 후 떨어지거나 지워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성능인증은 인증서에 기재된 제조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으로서 성능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8. 성능인증마크는 본래의 의미와 다르게 사용자가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방법으로 광고, 카탈로그 등에 사용하면 인증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됩니다.
9.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인증기관에 신청하여 인증서를 재발급 또는 변경내역 이면기재를 받아야 합니다.
 - 가. 상호, 대표자 또는 주소(소재지)의 변경
 - 나. 중대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변경(예: 모델명 변경, 파생모델의 추가, 변경 또는 삭제)
 - 다. 인증서의 분실 또는 훼손
10. 성능인증을 받은 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가. 성능인증표시 등 인증요건의 유지 관리
 - ※ 인증을 받기 이전 또는 정지·취소된 이후 생산된 제품에 성능인증 표시를 하면 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됨.
 - 나. 자체검사의 실시 및 그 기록관리
 - ※ 인증을 받은 자는 제품검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제품의 품질이 안전기준에 미달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11. 성능인증을 받은 자는 공장심사 또는 사후관리 공장방문 시 심사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성능인증서

(Products Certificate)

인증서번호
Ref. Cert. No.

KGS-22-024

신청인 : 한선엔지니어링(주)

License Holder

주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361로 27

Address

대표자 : 이제훈

CEO

공장명 : 한선엔지니어링(주)

Factory

소재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361로 27

Address

해당 규격명

Test Standard

시험된 제품시료는 우측

해당규격에 적합함을 증명함.

A sample of the product

was tested and found to be (수소자동차 연료 공급 부품)

in conformity with

STANDARD

EDITION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018호

2020

시험품 Tested Product

제품명 :

Product Category

수소자동차 연료공급부품

- 대상품 : 피팅

- 사용압력 : 35 MPa

모델/형식구분 :

Model/Type Ref.

SX-10M-H35K-S6 / S-Lok

Tube Fittings Union Cross(10M)

상표마크(해당하는 경우) :

Trademark (if any)

해당없음

공장심사 합격일

2022.05.10.

Factory Audit pass date

발행일자 : 2022.05.30.

Date of issuance

유효기간 : 해당없음

Validation

위 제품은 성능인증기준에 적합하므로 성능을 인증합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별지 제5호 서식)(을)



변경내역 및 추가정보
[Additional information (if necessary)]

인증서번호
Ref. Cert. No.

KGS-22-024

[illegible]

한국가스안전공사 ☎369-811 충북 음성군 맹동면 원중로 1390

Korea Gas Safety Corporation, 1390, Wonjung-ro, Maengdong-myeon, Eumseong-gun, Chungchongbuk-do Korea
Telephone: +82-(43)-750-1508, Fax: +82-(43)-750-1929

성능인증을 받은 자가 준수할 유의사항

(KGS-22-024)

1. 성능인증의 유효기간 : 해당없음
2. 성능인증 재신청
 - 가. 인증의 유효기간이 경과되었을 경우(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1월 사이에 신청)
 - 나. 인증 받은 제품의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 규격 또는 재료가 변경되었을 경우
3. 사후관리
 - 가.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이 인증기준을 지속적으로 만족시키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성능인증일을 기준으로 매 1년마다 사후관리를 실시(매년초 별도 안내공문 발송)
 - 나. 사후관리는 공사의 담당자가 제조업체를 방문하여 품질관리상태 점검(공정관리 등) 및 제품시험 실시
 - 동일 업체의 성능인증일이 서로 다른 품목의 사후관리는 가장 먼저 사후관리를 받아야 하는 품목의 사후관리일에 함께 실시
 - 다. 사후관리 계획을 통보받은 업체는 성능인증 신청서(사후관리 비용)를 제출하여 품목별 대표 모델(1년간 생산량이 가장 많은 모델 또는 생산 모델(호칭, 규격, 용량 등)에서 중앙값에 해당되는 것) 1개에 대하여 성능인증기준에서 정한 필수 시험항목에 대하여 제품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성능인증업체의 품질관리 상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성능인증 전체 모델에 대한 성능인증기준 모든 시험항목의 제품시험으로 사후관리를 대신할 수 있다.
4. 인증 받은 자의 의무
 - 가. 인증 업체는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이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① 업체명, 대표자 또는 양도, 양수 등으로 인한 법적 지위의 변경
 - ② 소재지 변경
 - ③ 성능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구조, 재료, 부품 등의 변경
 - ④ 외부업체가 변경된 경우
 - 나. 가의 규정에 의한 통보 사항이 성능인증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품목별 공사 담당자는 성능인증업체의 공정관리, 제품관리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결과 성능인증 제품의 품질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정조치가 될 때까지 성능인증마크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 다. 성능인증을 받은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약정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5. 성능인증의 취소 등 결과조치
 - 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성능인증을 취소 또는 정지 할 수 있다.
 - ① 성능변경을 수반하는 구조, 규격, 재료를 임의로 변경한 경우
 - ② 사후관리 제품시험 및 수거검사 결과 별표2에 따른 불량인 경우
 - ③ 4의 인증 받은 자의 의무 중 가항의 ③, ④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업체의 모든 인증 품목의 성능인증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 ① 사후관리를 거부한 경우
 - ② 성능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성능인증 표시를 한 경우 및 홍보한 경우
 - ③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인증서를 발급 받은 경우
 - ④ 4의 인증 받은 자의 의무 중 가항의 ①, ②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다. 성능인증의 취소를 받은 업체는 취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능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6. 인증의 표시방법
 - 가. 인증의 표시는 제조되는 각각의 제품마다 하여야 한다.
 - 나. 표시방법은 별도 안내되는 성능인증 표시방법을 따른다.
 - 다. 표시는 설치 후 떨어지거나 지워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성능인증은 인증서에 기재된 제조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으로서 성능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8. 성능인증마크는 본래의 의미와 다르게 사용자가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방법으로 광고, 카탈로그 등에 사용하면 인증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됩니다.
9.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인증기관에 신청하여 인증서를 재발급 또는 변경내역 이면기재를 받아야 합니다.
 - 가. 상호, 대표자 또는 주소(소재지)의 변경
 - 나. 중대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변경(예: 모델명 변경, 파생모델의 추가, 변경 또는 삭제)
 - 다. 인증서의 분실 또는 훼손
10. 성능인증을 받은 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가. 성능인증표시 등 인증요건의 유지 관리
 - ※ 인증을 받기 이전 또는 정지·취소된 이후 생산된 제품에 성능인증 표시를 하면 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됨.
 - 나. 자체검사의 실시 및 그 기록관리
 - ※ 인증을 받은 자는 제품검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제품의 품질이 안전기준에 미달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11. 성능인증을 받은 자는 공장심사 또는 사후관리 공장방문 시 심사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성능인증서 (Products Certificate)

인증서번호
Ref. Cert. No.

KGS-22-023

신청인 : 한선엔지니어링(주)

License Holder

주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361로 27

Address

대표자 : 이제훈

CEO

공장명 : 한선엔지니어링(주)

Factory

소재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361로 27

Address

해당 규격명

Test Standard

시험된 제품시료는 우측

해당규격에 적합함을 증명함.

A sample of the product

was tested and found to be (수소자동차 연료 공급 부품)
in conformity with

STANDARD

EDITION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018호

2020

시험품 Tested Product

제품명 :

Product Category

수소자동차 연료공급부품

- 대상품 : 피팅

- 사용압력 : 35 MPa

모델/형식구분 :

Model/Type Ref.

SX-4-H35K-S6 / S-Lok Tube
Fittings Union Cross(1/4")

상표마크(해당하는 경우) :

Trademark (if any)

해당없음

공장심사 합격일

2022.05.10.

Factory Audit pass date

발행일자 : 2022.05.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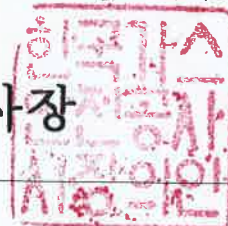
Date of issuance

유효기간 : 해당없음

Validation

위 제품은 성능인증기준에 적합하므로 성능을 인증합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한국가스안전공사 ☎369-811 충북 음성군 맹동면 원중로 1390

Korea Gas Safety Corporation, 1390, Wonjung-ro, Maengdong-myeon, Eumseong-gun, Chungchongbuk-do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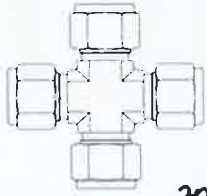
Telephone: +82-(43)-750-1508, Fax: +82-(43)-750-1929

변경내역 및 추가정보

[Additional information (if necessary)]

인증서번호
Ref. Cert. No.

KGS-22-023

일자 Date	내 용 substance			
2022.05.30	- 최초인증			
	No	Part name	Material	Q'ty
	1	Body	SS316	1
	2	Front Ferrule	SS316	4
	3	Back Ferrule	SS316	4
	4	Nut	SS316	4
	 2022.5.30 <i>정영민</i>			



한국가스안전공사 ☎369-811 충북 음성군 맹동면 원중로 1390

Korea Gas Safety Corporation, 1390, Wonjung-ro, Maengdong-myeon, Eumseong-gun, Chungchongbuk-do Korea

Telephone: +82-(43)-750-1508, Fax: +82-(43)-750-1929

성능인증을 받은 자가 준수할 유의사항

(KGS-22-023)

1. 성능인증의 유효기간 : 해당없음
2. 성능인증 재신청
 - 가. 인증의 유효기간이 경과되었을 경우(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1월 사이에 신청)
 - 나. 인증 받은 제품의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 규격 또는 재료가 변경되었을 경우
3. 사후관리
 - 가.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이 인증기준을 지속적으로 만족시키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성능인증일을 기준으로 매 1년마다 사후관리를 실시(매년초 별도 안내공문 발송)
 - 나. 사후관리는 공사의 담당자가 제조업체를 방문하여 품질관리상태 점검(공정관리 등) 및 제품시험 실시
 - 동일 업체의 성능인증일이 서로 다른 품목의 사후관리는 가장 먼저 사후관리를 받아야 하는 품목의 사후관리일에 함께 실시
 - 다. 사후관리 계획을 통보받은 업체는 성능인증 신청서(사후관리 비용)를 제출하여 품목별 대표 모델(1년간 생산량이 가장 많은 모델 또는 생산 모델(호칭, 규격, 용량 등)에서 중앙값에 해당되는 것) 1개에 대하여 성능인증기준에서 정한 필수 시험항목에 대하여 제품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성능인증업체의 품질관리 상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성능인증 전체 모델에 대한 성능인증기준 모든 시험항목의 제품시험으로 사후관리를 대신할 수 있다.
4. 인증 받은 자의 의무
 - 가. 인증 업체는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이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① 업체명, 대표자 또는 양도, 양수 등으로 인한 법적 지위의 변경
 - ② 소재지 변경
 - ③ 성능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구조, 재료, 부품 등의 변경
 - ④ 외주업체가 변경된 경우
 - 나. 가의 규정에 의한 통보 사항이 성능인증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품목별 공사 담당자는 성능인증업체의 공정관리, 제품관리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결과 성능인증 제품의 품질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정조치가 될 때까지 성능인증마크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 다. 성능인증을 받은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약정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5. 성능인증의 취소 등 결과조치
 - 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성능인증을 취소 또는 정지 할 수 있다.
 - ① 성능변경을 수반하는 구조, 규격, 재료를 임의로 변경한 경우
 - ② 사후관리 제품시험 및 수거검사 결과 별표2에 따른 불량인 경우
 - ③ 4의 인증 받은 자의 의무 중 가항의 ③, ④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업체의 모든 인증 품목의 성능인증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 ① 사후관리를 거부한 경우
 - ② 성능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성능인증 표시를 한 경우 및 홍보한 경우
 - ③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인증서를 발급 받은 경우
 - ④ 4의 인증 받은 자의 의무 중 가항의 ①, ②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다. 성능인증의 취소를 받은 업체는 취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능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6. 인증의 표시방법
 - 가. 인증의 표시는 제조되는 각각의 제품마다 하여야 한다.
 - 나. 표시방법은 별도 안내되는 성능인증 표시방법을 따른다.
 - 다. 표시는 설치 후 떨어지거나 지워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성능인증은 인증서에 기재된 제조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으로서 성능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8. 성능인증마크는 본래의 의미와 다르게 사용자가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방법으로 광고, 카탈로그 등에 사용하면 인증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됩니다.
9.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인증기관에 신청하여 인증서를 재발급 또는 변경내역 이면기재를 받아야 합니다.
 - 가. 상호, 대표자 또는 주소(소재지)의 변경
 - 나. 중대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변경(예: 모델명 변경, 파생모델의 추가, 변경 또는 삭제)
 - 다. 인증서의 분실 또는 훼손
10. 성능인증을 받은 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가. 성능인증표시 등 인증요건의 유지 관리
 - ※ 인증을 받기 이전 또는 정지·취소된 이후 생산된 제품에 성능인증 표시를 하면 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됨.
 - 나. 자체검사의 실시 및 그 기록관리
 - ※ 인증을 받은 자는 제품검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제품의 품질이 안전기준에 미달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11. 성능인증을 받은 자는 공장심사 또는 사후관리 공장방문 시 심사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